

국·내·입·법·의·견·조·사

제 8 호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1993. 6.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2·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이준우

선임연구원 최성근

연구원 배승희

목 차

제 1 편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 | |
|---|----|
| I. 문제의 소재 | 5 |
| 1.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 |
| 2. 농지제도와 관련된 입법상의 쟁점사항 | 6 |
| II. 각계의 의견 | 8 |
|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 8 |
| 1)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 8 |
| 2) 농지보전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 비농업진흥지역의 전용허용문제 | 18 |
| 3) 농지임대차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 26 |
| 4) 기 타 | 28 |
| 2. 각계의견의 정리 및 평가 | 31 |
| III. 현행법, 관련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 | 35 |
| 1. 현행법 | 35 |
| 2. 관련입법안 | 38 |
| 1) 농지기본법(가칭) 제정안 | 38 |
| 2) 생산녹지법(가칭) 제정의견 | 39 |
| 3) 토지이용규제법률 통폐합안 | 40 |
| 4)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중 농지관련부문 | 41 |
| 5) '93년도 정부입법예정 법률안 | 42 |
| 3. 외국의 입법례 | 42 |
| 1) 일 본 | 42 |
| 2) 대 만 | 44 |

| | |
|-------------------------|----|
| IV. 입법방향 | 45 |
| 1. 농지관련법의 정비 | 45 |
| 1) 정비 대상 | 45 |
| 2) 정비 방법 | 46 |
| 2. 도시농지의 보전문제 | 48 |
| 3. 농지관련법 정비의 선결문제 | 50 |
| [참고자료] | 52 |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 | |
|--------------------|-----|
|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57 |
| 1. 최근입법의견 목록 | 58 |
| 2. 최근입법의견 요지 | 63 |
| II. 최신법령 목록 | 123 |

제 1 편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I. 문제의 소재

1.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49년 농지개혁법의 제정·시행에 의하여 단행된 농지개혁으로 자작농 체제가 구축된 이래, 농지매입 제한과 3ha 소유상한제도 및 임대차의 금지가 시행되어 왔다. 1958년에서 1979년까지 6차례에 걸친 농지법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고, 1972년 농지보전법의 제정으로 절대농지·상대농지 지정, 농지의 전용 제한,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여 주곡자급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도모하여 왔다. 1980년 헌법 개정으로 법률로 정하는 임대차가 허용된 이래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1986)으로 농지임대차가 합법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의 제정(1990.8.27) 지연으로 시행이 상당기간 유보되기도 하였다. 1987년 개정헌법에서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고 다음해 농지매매증명제도의 운영강화로 경자유전원칙의 실질화 및 농지투자 억제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992년 전용부담금제 도입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농업구조개선 투자재원 및 터전을 마련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대한 투자집중 및 보전시책을 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농지개혁 당시와는 현저하게 농지관련 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국내적인 여건의 변화로는, 농지면적의 감소¹⁾와 경지이용구조의 변화, 농지가격의 급등, 농지임대차 감소와 임대차 면적의 증가, 농가의 경영규모의 영세성 지속, 농지의 유희화 현상 증가, 농업인구의 격감 및 고령화, 자작농과 전업농 비중의 저하라는 농가 경영형태의 변

1) 앞으로 경지이용률이 종래와 같은 저하추세가 아니라 일정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농경지 이용면적은 1984~91년간에는 연평균 0.4%, 1991~2001년간에는 연평균 0.3%의 속도로 감소됨으로써 국내농업생산수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鄭英一, "토지수요의 확대와 간척개발의 정책과제", 『토지와 개발』,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233~234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농업부문』, 1986, 60쪽 참조.

화, 비농업목적의 토지수요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²⁾ 한편,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로는 UR 라운드과 관련하여 1997년 7월부터 농산물의 완전한 수입개방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이다. 이는 농수산물의 경우도 이제까지의 국가적 보호에서 완전한 국제적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지관련 여건의 변화는 결국 농업구조조정과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를 당면의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주곡생산의 자급문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곤란성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2. 농지제도와 관련된 입법상의 쟁점사항

농지제도상의 중요한 입법적, 정책적 문제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문제와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소유에 관한 문제는 다시 농지소유의 자격에 관한 부분과 농지소유의 상한에 관한 부분 및 농지거래제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농지소유의 자격문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의 적용문제에서 출발한다. '경자'의 범위에 자경농민 이외에 어디까지 그 범위를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자'는 헌법 제121조와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자경농민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

2) 농업적 토지이용 형태와 그 변화를 파악하는 이론적 측면의 고찰로는 (1) Thünen의 「고립국」의 농업적 토지이용형태에 대한 이론과 (2) 농촌·도시연변지역에서의 농업적 토지이용의 형태에 관한 Sinclair, Bryant의 연구 및 (3) 의사결정과 행동적 개념에 의한 토지이용형태의 변화 연구로 Gould와 Wolpert의 연구가 있다.

Thünen의 이론은 같은 자연조건하에서 농업의 공간적 분화를 야기시키는 원리는 소비와 생산입지간의 거리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Sinclair는 Thünen의 이론에 역행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의 급속한 발달이 농업적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공업화,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가, 개발업자,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감퇴시켜 경작포기 또는 일시적 경작이 행하여진다고 한다: 韓柱成, 「토지이용형태와 지역개발의 방향」, 土地와 開發,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208~209쪽.

의 농지소유는 금지되고 있다. 이는 부재지주의 농지소유가 결국은 임차농의 확대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농지의 임대차와도 관련된다. 소유의 자격은 농지취득의 경우와 취득후의 자격유지 문제로 나누어 진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후자의 자격유지 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농지소유의 상한은 현재 농지개혁법상은 3ha로,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10ha로(농업진흥지역 밖은 3ha) 되어 있는데,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한의 상향 조정 내지 궁극적인 상한제의 철폐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영농규모의 최소한과 최대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정책과 관련되며, 또한 권역별 농지보전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면에는 농지의 영세화, 상속 등에 의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함께 존재한다.

농지거래제한의 문제는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지소유의 자격 중 취득에 관한 부분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특칙으로서 운용되고 있다.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요건과 절차의 완화 및 확대가 특히 현안의 문제이다.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문제는 농지보전제도와 농지임대차제도로 대변된다. 이는 농지의 용도제한 내지 전용의 제한으로 국토 중 농지의 전체면적을 적정선에서 확보하려는 국가정책과 결부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농지를 농업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물리적인 형질의 변경으로 인한 농지의 상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

농지소유에 관한 제도로는 i) 농지소유상한제, ii)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 iii) 농지매매증명제, iv) 종합토지세제, v)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등이 있다.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제도로는 i) 국토이용계획제도상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ii) 권역별 농지보전제도로 농업진흥지역제, iii) 농지전용제한제 등이 있다.

기타 제도로는 농지구입자금지원제도, 농지관리위원회제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제도 등이 있다.

그밖에 농지제도에 관련한 문제로서는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대외적 경쟁력의 확보와 농업의 활성화 문제, 식량주권으로 표현되는

농업부문의 산업상 비중을 확보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와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과 같은 복합적 문제가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i) 농지소유제도, ii) 농지보전제도, iii) 농지임대차제도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국내 각계의 입법의견을 조사·분석하고 현행법령과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 본 다음, 입법방향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Ⅱ. 각계의 의견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1)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1)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여부

① 유지 의견

○ 장상환(경상대 교수) 문란해진 농지제도를 정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영세소농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농지는 농민과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농사조합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농지법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 『농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1989.6.21).

○ 세계일보 사설 정부가 현행법인데도 사장시켜 오고 있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부채지주의 일소와 경자유전원칙을 관철하는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앞으로 토지투기의 핵심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볼 때에는 농업에서의 부채지주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1990.5.21).

○ 정영일(서울대 교수) 농지의 농업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터에 도시자금이 농지에 투자될 경우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 뻔하다. 비농민에 대한 농지매입 허용은 농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투기화와 농업위축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동아일보 평론, 1991.4.2).

○ 농수산부 가. 농지값이 상승할 경우 농지투기를 초래, 투기목적의 매입주와 농지를 팔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득이 되겠지만 농지를 늘려 경쟁력을 갖춰 가며 계속 농사를 지을 농민에게는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농업포기정책이나 다름 없다. 대안으로 농촌에 전가족이 6개월 이상 살아야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8km 이내에 거주해야 농지구입이 허용되는 조항도 20km 이내로 확대하며,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농지매매활성화로 농지가격하락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청와대 보고 「농어촌대책 추진계획」, 1991.4.3).

나. 농수산부 관계자 경자유전 원칙의 폐기는 헌법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다.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자유로워지면 농지가 도시민의 땅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농지값이 마구 올라가며, 그 결과로 농산물의 생산비만 상승하게 된다. 가격경쟁력 면에서 외국농산물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놓여 있는 우리 농산물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한겨레 1993.3.4, 7면).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적 토지공개념의 확대로 비농민의 토지소유를 억제키 위해 ㉠ 부채지주 소유농지의 농민 환원, ㉡ 종합토지세율 강화, ㉢ 농지의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 농지매매증명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제7차경제개발계획 기본구상).

○ 서울신문 사설 농지소유상한 확대는 자칫 농지의 투기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비농민자본의 농지매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경자유전원칙의 철저한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1991.7.25).

○ 이정찬(전국농민회 총연맹 대변인) 농지소유는 농민과 농민들이 결성한 영농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농협 등 농민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농사의 이익은 영농주체에게 돌아가야 농사가 계속될 수 있다. 정부와 농협 등의 농민단체는 비농민 소유의 농지가 농민이나 영농법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민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한 뒤 주말농장·실

습농원 등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은 자칫 잘못하면 누가 주말농장 등 사업의 주인이 되느냐는 점과 유희농지의 더 나은 활용방안 등이 간과될 소지가 있다. 관광농업도 그 중심은 농업이지 관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한겨레신문 지상토론 “농어민단체 농지소유 허용”, 1992.6.12).

○ 한겨레신문 사설 말이 좋아 영농법인이지 그것을 일반기업과 구별하여 통제할 수단과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농지를 소유한 법인이 ‘우직하게’ 농사만 지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농사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고 팔아도 사실상 그것을 규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그 고색창연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할 원칙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것을 버림으로써 빚어지는 위험이 그것을 지키므로써 감당해야 하는 불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 구조 조정이 농촌의 인위적 해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농민의 자립 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경자유전의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1992.6.12).

○ 남구희(농어촌진흥공사 부사장) 아직도 대부분의 농지를 농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완전 임차농가는 매우 적은 실정인데도, 자작농 체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자유전에 관한 헌법의 조항(제 121조)은 오늘에도 우리 농업현실에 비추어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적절한 조항이다. 우리의 현실은 경자유전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경자유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며 임차농이나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완전한 경자유전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농업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자작지가 축소되었다 하여 경자유전원칙을 철폐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농민신문 평론, 1992.7.13).

② 완화 의견

○ 김병태(전국대교수) 작금의 농지가 폭락에는 근본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작용하고 있다. 기계화 대경영을 추구하는 경영의 협동화에는 일정 한도내에

서의 비농민의 참여가 아무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농민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비농민토지소유는 임대차관리법에서 허용되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 평론, “농지가격 폭락과 농민 대응”, 1991.2.27).

○ 중앙일보 사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비록 농민단체라 하더라도 농지소유를 허가하는 것이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농민」이라는 범위안에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농과 유희지로 표현되는 농업현실은 「농사 짓는 자가 농토를 소유해야 한다」는 관념만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소유문제도 경제적 동기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1992.6.11).

○ 김선오(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장) 그 동안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맞추어 농가에 한정됐던 농지소유자격을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농어촌진흥공사, 영농조합법인 등 일부 법인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러한 농지소유자격을 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자유전의 원칙 안에서 농민생산자단체의 육묘장·시범포 등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농지취득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농지소유규제를 완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농지투기나 특정인 및 농민단체 등으로의 농지집중 따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세제·전용제한·목적외 사용 때 환수 등 대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한겨레신문 지상토론, “농어민단체 농지소유 허용”, 1992.6.12).

○ 농민신문 사설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소유를 불허함으로써 농지의 투기화 또는 농민의 소작인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볼 때, 농민단체인 농협이 주체가 되어 종묘를 육성하고 시범포를 경영하는 등의 행위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경자(耕者)의 개념은 시대의 변천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영세소농의 단체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다만, 일반 상업자본이 영농이

외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될 빌미가 제공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농어민단체의 농지취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1992.6.17).

○ 김병태(건국대교수) 사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의 농지정책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장벽이 많다. 물론 한국농업문제를 발생시킨 내적인 요인은 「자작농주의」에 입각한 소농경제 자체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이 폐업직전에 있고 소작농이 해마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근본에는 이 소농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외적요인인 독점자본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소농경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자유전을 이기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경자유전의 원칙아래서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농촌문제의 초점이며, 여기에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만약 경자유전원칙의 포기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은 뒤, 그래도 실패라는 판명이 날 때 해야 할 것이며, 이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이다.

한국의 농지문제 해결은 실로 소농경제와 소작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경영농민이 각자의 농지를 그대로 소유한 채 경영만 대형화할 수 있는 생산조직을 육성하여 이 조직에 재촌지주도, 부재지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집단영농이다(동아일보 지상토론, 『농지 경자유전 원칙』 폐지냐, 유지냐 …”, 1992.6.24).

③ 폐지 의견

○ 강경식(전재무부장관) 농업이 발전하려면 농촌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 활용도를 높여 ‘농지’를 ‘토지’로, ‘경자유전’도 ‘用者有土’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중앙경제신문 평론, 1991.1.14; 매일경제신문 평론, 1992.11.2).

○ 민자당 가. 경자유전원칙을 전면 재검토, 부재지주에게 농지매입의 기회를 주어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하려는 농민이

혈값에 농지를 팔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찬성의견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져 어차피 은퇴할 농민이 많고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향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으로 기업농화하는 것이 농업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민자당 주최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1.4.1).

○ 김성호(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 당면한 지가하락은 능력있는 농가로 하여금 규모를 확대하도록 농지구입자금·기계화·기반정비·소유상한의 폐지 등 경작수요의 창출에서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지조건에 따라 농지를 휴양지·택지, 공장부지 또는 부업단지 개발이 유리한 곳은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이젠 식량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한 이상 이에 대응된 고용기회의 확대야말로 농정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이런 지역의 농지가 비로소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경자유전의 폐지는 아니다. 끝까지 경자유전을 고수하다가 개발고시가 나면 실수요자에게 넘겨야 농민도 덕보고 도시인·상공인도 모두 덕보게 된다(조선일보 평론, 1991.4.2).

나. 농지상속과 영농휴계자를 전제로 하는 자작농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다. 또한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기계화 및 규모확대가 불가피하다.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싼 이자를 물며 자작지를 구입하기보다 임차지를 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때문에 자작농원칙은 앞으로의 농업발전에 필수조건도 아니다. 자작농원칙을 규정한 헌법조항은 현실에서는 이미 허구화된 것이다. 이젠 가면을 벗고 현실에 대응할 시기가 왔다. 그렇다고 농지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철폐하자는 「用者有田」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유 보전, 조세제도가 하나로 종합된 토지정책에서 농지의 소유개방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요컨대 자작농원칙은 농지가 부족할 때의 농지소유원칙이었다(동아일보 지상토론, “『농지 경자유전원칙』 폐지냐, 유지냐...”, 1992.6.24).

○ 한국경제신문 사설 이농과 농촌일손부족현상이 갈수록 심각하고 유희농지가 늘어나는 한편으로 개방압력이 격화되는 현실속에서 살 길은 기계

화와 기업화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허울 뿐인 경자유전원칙 대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고, 둘째 소유상한 확대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리는 등 농지정책과 제도의 획기적 전환이 앞서야 한다(1992.6.11).

○ 경제기획원 가. 자경농민 위주의 현행 영농체제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위탁영농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시민 등 비농민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나. 농지구입요건(농지 구입을 위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 요함)을 없애는 등 농지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한겨레, 1993.3.4, 7면).

(2) 농지소유의 상한

① 점진적 확대

○ 중앙경제신문 사설 농지소유 상한 자체가 '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명시된 것으로 그후로 10년이 네번씩이나 지나 모든 경제여건이 엄청나게 바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난 40년간 농지소유규제가 시행되어 오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그 본래의 의도대로 농업의 안정적 운용을 기해왔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오히려 농지상한제와 같은 지나친 보호명분의 제한조치가 오늘의 농업을 유리, 고립시키는 역작용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과열화는 전반적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과제이며 그것은 농업발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은 농지상한제 여부와 관계없이 심화될 것이다. 다만 농지소유 제한의 철폐는 부재지주의 대규모 과점 매입 그리고 농지전용의 획책 등 농업발전과는 상치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소유상한제의 점진적 완화와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토지매입을 선별 규제하는 등 보완책으로 방지할 수 있다(1990.10.23).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 등 1차산업의 쇠퇴와 상대적 비중저하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산업화 추세 속에서 농업의 안정을 유지·지속시키기 위

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정보로 되어 있는 농지소유 규제상한은 대폭 완화·조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필지별로 보전해 온 현행 농지보전방식을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내에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5~10정보로 완화하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현행 대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유상한의 완화로 인한 부작용은 소유상한제의 점진적 완화와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토지 매입을 선별규제하는 등 보완책을 병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한겨레신문, 지상토론 “농지소유상한확대”, 1991.2.1).

○ 농촌경제연구원 현행 3정보 농지소유상한을 10정보 내외로 하되, 품목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제7차경제계획 기본구상 농업부문).

○ 민자당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상한을 5~10ha로 상향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서울, 1991.4.2, 2면).

○ 서상목(민자당 정책조정실장)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소유상한제도를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더라도 상속·증여세나 농지세의 누진율기준은 10ha 선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억제하는 강력한 보완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서울, 1991.4.2, 2면).

○ 내외경제신문 사설 무엇보다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으로 상징되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물결에 우리의 농업이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지소유상한선을 확대,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다고 본다(1991.7.25).

○ 한국일보 사설 농지상한 확대계획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계획의 일단이다. 일단 그 취지에 동의를 보낸다. 그러나 동 계획의 시행에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지의 투기화와 부채지주의 증대가능성, 부채지주가 농지확대의 호기를 이용 기존의 경작자를 앞세워 농토를 넓힐 수 있는 문제점, 이농한 영세농이나 기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고용 등의 제반문제이다. 이를 극소화하는 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991.7.25).

○ 동아일보 사설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요컨대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상한선을 확대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현실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첫째 상한선의 범위로 정부가 20ha로 내세운 것은 대단히 획기적이다. 둘째 전국 212만ha 농지 가운데 약 150만ha로 잡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의문이다. 셋째 자경농민이라고 해도 20ha정도의 땅을 소유할 재력이면 토지생산성보다 장래 자산가치 상승을 더 목표로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농업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농지소유 상한선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등 무리를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농지상한선을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자경농민에게 융자해주는 장기 저리의 막대한 농지구입자금이 토지 자산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예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1991.7.25).

② 대폭 확대

○ 김정호(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소유상한 문제는 소유자격(주체와 단위)을 별개로 두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농업의 능률과 농가의 생활보장을 위한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완화를 부채지주의 토지점병과 소작지 증가 내지는 도시자본의 투기장화까지로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21세기를 향한 농업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농업도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농가의 규모확대 가능성은 제도 이전의 문제이며, 이미 상당수의 3정보 이상 소유 농가를 '범법자'로 만든 현재, 상한규제의 현실적 의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농지제도의 피리가 축소되기까지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경자유전 원칙을 견지하면서 소유상한을 완화하여 실경작자 위주로 규모가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한겨레신문 지상토론 “농지소유상한제 폐지”).

1991.7.24; “전업농 육성방안”, 민자당 주최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1.4.1).

○ 농수산부 가.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현재 3ha 상한규모를 20ha로 대폭 늘리는 안 : 20ha 상한선은 농촌경제연구원이 2001년의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계와 소득에 균형을 이루고 트랙터 등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을 때의 수지맞춤 등을 근거로 계산해 낸 기준규모임. 농산물의 수입개방 뿐아니라 현재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기계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

나. 상한규모 이상의 농지는 해당농가의 경영능력 등을 고려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면적을 합산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거나 자영하는 농가에 한한다(농수산부 주최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 1991.7.24; 서울, 1991.7.25, 3면 해설).

○ 한국경제신문 사설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는 우리 농업의 현실과 관련해서 진작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한국농업의 최대문제는 다름아닌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기법의 낙후성에 있는데 그에서 탈피하는 길은 곧 규모의 확대 내지 경제단위화를 통한 기업화, 기계화, 과학화밖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20ha 상한선의 적정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폭적인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자영자경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만 있다면 상한선을 더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는 먼저 한국농업의 미래상과 그와 같은 미래상에 접근하기 위한 장기농정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예상되는 부작용예방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1991.7.25).

○ 경향신문 사설 농지정책에 요구되는 것은 「경자유전」의 전통적 가치관과 농업의 시장성을 확보하자는 두 가지 상극적 요소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소유 상한선을 20ha로 대폭 확대하면서도 전업농만을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농지정책은 이런 배경을 조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개혁이 과연 현재의 농민들을 주축으로 농업을 경쟁적

인 산업으로 육성·보존한다는 뜻에서 발상된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다시 말해 대기업농의 주역이 누가 될 것이냐는 문제다. 새로운 대기업농은 대규모의 농토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영자적 자질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91.07.25).

○ 중앙일보 사설 농지소유 상한선의 사실상 철폐와 관련하여, 농정당국에 간곡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지의 투기화를 막는 장치와 그 시행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농지가격의 안정은 투기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영농의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 된다(1991.7.25).

③ 확대 반대

○ 한겨레신문 사설 전국 농지의 36%가 소작지이고 전체농민의 3분의 2가 소작농이며 이들 소작농 대부분이 1ha미만의 영세농인 현실에서 상한선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는 농촌의 구조적 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영세농민의 탈농을 부채질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을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적 경비만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영세농의 협업을 제도화하고 영농비 절감과 유통개선 등으로 농업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영농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농가에 한해서만 상한선 규제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1991.7.13; 1991.7.25).

○ 박진도(충남대교수) 정부의 농지제도 개편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농지의 절반 가량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쓸모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농민의 농지투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상한선이 확대되면 농지가 소수의 손에 편중될 것이다. 이는 결국 소작제의 확대와 농민간의 이질감 심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한 것은 일부 대농의 소유지 확대가 아니라 소작농을 소작료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농지제도의 개혁이다. 농업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농지투기와 소작제의 확대를

가져올 따름이다.

비농민의 소유농지는 국가가 몰수 또는 매입하여 영농능력은 있으나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분배하거나 무상으로 장기임대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농지소유상한 3정보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농가에 한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고, 비록 농민이라 해도 영농이 아닌 목적으로 3정보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매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지역농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한겨레신문, 지상토론 “농지소유상한확대”, 1991.2.1).

○ 장원석(단국대교수)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문제는 정부·여당이 즐겨 쓰는 말, 곧 “배후세력”(여기서는 자본)의 숨겨진 의도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논의조차 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 상한제를 철폐하게 되면, 재벌그룹 등 거대 농지 소유자와 도시자본이 지난 수십년간 저질러온 불법적 탈법적 불가사리형 소유를 합법화시켜 주게 되고, 농지의 효율적·생산적 이용은 저해되며, 소유의 격차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환경보전수단을 제외하고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유상한의 확대는 농업채산성의 제고책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한겨레신문, 지상토론 “농지소유상한확대”, 1991.2.1).

○ 이상일(중앙경제신문 기자) 어차피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대규모 영농을 하거나 농촌의 자산가층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에게 농지구입자금을 대줘 땅값차익까지 얻게 하느니 보다는 땅은 소유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공적임대차제도를 더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지소유상한을 늘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쌀등 곡물류의 생산비 인하 때문인 점을 감안하여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 농가 등 고수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농지소유제한을 어느 정도에서 묶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중앙경제신문 해설 『농지제 개혁』 잘될까 -땅팔 사람 적어 기업농에 어려움(下)-, 1991.8.3).

(3) 농지거래 : 농지매매증명제

① 농지거래의 자유화 문제

○ 김상영(동아일보 기자) 제도자체의 모순과 담당공무원들의 세법목인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행위가 심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상속·증여에 의한 농지취득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농가소유농지는 지난 83년 전체농지의 16.1%에서 85년 19.3%, 87년 20.7%, 88년 21.5%로 늘어났고, 임차농지율도 70년 17.6%, 80년 21.3%, 85년 30.5%에서 88년에는 34.8%까지로 증가했다(동아, 1990.4.15, 3면)

○ 농수산부 가. 농지매매증명제도의 강화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하여 농지매매증명제도 등을 폐지하면, 부동산투기 바람을 일으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현행제도의 골격은 계속 유지하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하여 나아갈 계획이다(한국, 1991.3.2, 2면·6면).

나. 농지거래의 완전 자유화는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농지를 대대적으로 구입, 소유하는 등 농업의 기저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농수산장관 2월임시국회 본회의 답변, 1993.2.15).

○ 국민당 농지거래 자유화로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대선공약, 동아, 1992.11.9, 3면 해설).

○ 농수산부 경제행정규제완화협의회 도시계획구역의 농지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용지에서 제외된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증명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모든 농지에 대해서도 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1993.3.9 회의/ 서울, 1993.3.10, 8면).

②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완화

○ 농수산부 가. ① 민간업계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실습 목

적과 종묘 등 농업자재 생산에 필요한 농지 취득도 허용, ㉠ 농지취득시 사전거주 제한 완화 : 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후계자, 농과계학교 졸업자 등의 신규영농 참여 촉진을 위해 농지취득전 농지소재지 6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를 허용,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시 가능토록 예외 허용, ㉡ 농지매수가능 통작거리 제한 완화 : 농민에 한하여 과수원의 통작거리를 폐지하고 전답의 통작거리를 확대(20km → 연결 시·군 또는 40km), ㉢ 농지매매증명 발급 확인인원의 간소화방침(농지관리위원 3인 → 2인) (농수산부 행정규제완화계획, 1993.3.25).

나. 공장의 건설을 쉽게 해주면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유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 매매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중앙일보, “농지규제완화 공방”, 1993.5.7).

○ 건설부 토지거래허가(신고)제 개선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농업진흥지역과같이 투기대상이 어려운 토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건설부 '93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

③ 기타 의견

○ 국토개발연구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매매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로 삼는 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동법 제16조에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동조는 제16조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는 매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농지개혁사업이 종료된 후인 1969년 8월에 제정된 동법 시행규칙은 동조를 근거로 하여 제51조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1958년 이래 7차에 걸쳐 농지법 제정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1986년말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농지개혁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개혁법을 이어 받을 농지제도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토지거래규제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87-21, 54면).

(4) 농지의 불법취득문제

○ 농수산부 현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으면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등기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규정 외에, 소유상한을 어기거나 자영농민으로 위장하여 농지소유 확대혜택을 보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삽입키로함(농수산부 주최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 1991.7.24).

(5) 부재지주 농지상속 규제

○ 민자당 부재지주의 농지보유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농촌의 피폐현상 및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재지주의 농지상속을 제한, 전업농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재지주의 상속농지를 정부가 매입, 영농의사가 뚜렷한 영농후계자나 전업농 희망자에게 장기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자금은 「농지관리진흥기금」을 확대, 정부의 농지매입자금을 조성하며, 농지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한국일보, 1993.5.29, 26면).

2) 농지보전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 비농업진흥지역의 전용허용문제

① 허용의견

○ 농민신문 사설 앞으로 도시근교등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의 투기적인 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는 계획면적 이상을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식량의 안정확보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한편 진흥지역의 농지의 개발이익을 전액 진흥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진흥지역의 농지의 투기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진흥지역내의 농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1993. 1.8).

○ 김정호(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으로 국민식량의 수급을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일단 전용된 농지는 거의 다시 재생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가능한 한 농지훼손을 줄인다는 국민적 공감하에서 현재 전농지의 88%를 농용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의 측면에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농지의 전용도 계획적으로 질서있게 유도하는 것이 과제이다(한국농어민신문 평론 “농업의 영토선언... 진흥지역”, 1991.2.6).

○ 정 부 ㉠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투자를 집중 지원하여 조기정착시키고,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공장·주택부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함(절대농지·상대농지제도 폐지). ㉡ 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 공장용지·택지·과수원 등으로 개발한 뒤 해당지역의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분양키로 함. ㉢ 상대농지전용권한 위입범위를 15ha에서 30ha로 확대하고, 농가의 축사전용 신고범위도 450평에서 1천평으로 확대할 방침(농어촌대책 특별보고 - 이승윤부총리와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1991.1.23).

○ 농수산부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전용 때 반드시 허가·협의·동의·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고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신고전용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논의(1993.3.9 경제행정규제완화 협의회).

○ 건설부 현재 10개의 용도지역을 4개로 통폐합하고 개발목적의 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토지이용을 도모할 계획임. 즉, ㉠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는 순수한 보전목적이지 아니므로 준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용도로 이용하며, ㉡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에 일임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의 행위규제를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되, ㉣ 단기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준보전임지인 산림보전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규제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지의 총면적이 3만평방미터 미만인 주택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허용할 계획임(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1993.3.25).

○ 강운모(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무분별한 농지, 산지훼손과 환경오염의 우려 및 규제완화로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야기시킬 우려에 대하여, 대규모 토지개발은 토지수급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고, 농지,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관련법에 따라 오염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훼손은 방지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완화시 일시적 부분적으로는 지가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토지공급이 원활해져 근본적으로 토지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주최 『주요토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1993. 4.27, 18~19쪽).

○ 오진모(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목적은 보전의 필요가 있는 우량농지, 산림지, 자연생태계 등은 철저히 보전하고 보전의 가치가 적은 산지와 농지는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킴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일부 반대론자들은 농지의 무질서한 훼손과 토지투기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준보전지역을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관리해도 농지 및 산림관련 개별법에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 심사를 하게 되고 대규모 토지개발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전환하는 등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가용토지 수요량이 향후 10년간 1천2백99평방km 수준에 불과하여 준보전지역에서 이를 충당한다고 해도 그 면적이 5%도 안되기 때문에 그 우려는 지나치다. 둘째 대규모 토지개발의 경우 전면 매수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위주로 개발하고 개별토지 이용의 경우에도 가용토지로 전환되는 데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장치를 미리 마련하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못된다(서울신문, 「오늘의 쟁점」 “농진지역의 농지개발 허용해야 되나”, 1993.5.7., 8면).

② 불허 의견

○ 성진근(충북대교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앞서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우리 국민의 식량자급률 수준이다. 앞으로 진흥지역 밖의 농지라 할지라도 정부는 한계농지의 재개발 등을 통해 일정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량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흥구역 이외의 땅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및 농지이용권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지가하락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진흥권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한 보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중앙경제신문 평론 “농지공장용지 전환 부작용 우려”, 1991.2.9).

○ 농수축산신문 사설 엄격한 규제하에서도 농지감소가 피할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제도적으로 농지전용을 허용한다면 실제 농지잠식은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농업을 일정한도내에서나마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려면, 기왕의 농지는 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농정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연후에 해제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993.4.23).

○ 한국농어민신문 사설 정부의 농업부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은 첫째, 위험수위에 와 있는 국토의 환경보전문제와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도시문제 완화기능 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물론 도시의 소비자 보호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토지 및 농업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경우의 식량자급 문제 등도 무시되고 있다. 둘째, 농업·토지부문에서는 토지공개념의 도입 등은 검토되지 않고 오히려 토지의 사적이용과 개발을 촉진,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높아 개혁에 역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부문의 정책목표와 상충하고 있다. 셋째, 이 정책은 신농정의 정책목표와도 배치되고 있다. 준보전지역의 지정·개발은 농지가격의 앙등을 초래, 성장작목중심의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훼손될 것이다. 넷째, 이정책은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초래할 것이다. 농지 및 토지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건의한다(1993.4.23).

○ 김정부(농촌경제연구원 토지경제실장)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안에 대하여는, 전용될 토지의 대부분은 첫째, 농지와 임지라는 점에서 농지가 계획성없이 쉽게 개발될 경우 식량생산의 터전 상실은 물론 국토이용구조의 왜곡까지 초래한다. 둘째, 지가폭동의 원인은 가용토지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용도지역 지정은 농지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 넷째, 전국토의 28.5%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준보전 임지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촌권역을 분해시키고 농업생산을 위축시키는 것은 농업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토를 도시 및 개발 지역은 도시권역, 농지와 농촌지역의 취약지역은 농촌지역, 임지는 산림권역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보전하되 토지 수요에 따라 공급을 쉽게 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은 상위법으로서 국토를 도시권역, 농촌권역, 산림권역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고 이러한 권역의 관리는 개별법에 위임해야 한다(서울신문, 「오늘의 쟁점」 “농진지역의 농지개발 허용해야 되나”, 1993.5.7, 8면).

3) 농지임대차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① 허용 의견

○ 농림수산부 가. 반드시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임차료 상한선으로 설정, 임차농을 보호하기로 함.

나. 임차료 하락 현상과 소농보다는 대농층에 의해 임대차에 의한 규모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근래의 현상은, 지금과같이 농지가격이 기대수익지보다 높은 현실하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임대차를 통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유도하는 시책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전업농의 농지 장기임대차시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선급금 대상농지를 현

재에는 “1ha 미만의 전업코자 하는 농가의 농지”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으며, ㉠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유동화 지원사업에서 임대차사업 분야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사업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토록 하여 앞으로 전업농이 농지를 빌려 영농규모를 늘리는 경우의 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농수산부장관 '90 업무계획보고).

○ 내외경제신문 사설 임차농의 제도화는 부재지주의 존재와 이에 따른 소작관행을 양성화함으로써 농촌 또는 영농의 현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이와 아울러 영농능력에 비해 소유농지가 부족한 농민들이 비영농지주의 농토를 임차함으로써 영농규모의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임차농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소작농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1990.8.11).

② 불허 의견

○ 한겨레신문 사설 농지개혁 이래 비록 표면상의 선언조항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인데,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으로 정부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폐기하고 말았다. 농촌인구가 자연적으로 공업부분에 흡수되고 사회의 온갖 제도적 장치들이 농가를 안정시키기까지는 비록 이미 제정된 법이기는 하나 그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1990.3.21).

○ 장원석(단국대교수) 임대차(소작)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것도 그렇고,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임대차관계의 협의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을 업무로 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반농민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선거에 의하여 농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위로부터 위촉받은 농민이나 행정관료 및 관련기관 임직원이 자본의 금전공세에 매수되지 않으면서 농민의 이익을 끝까지 관철시키리라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시행되면 위탁경영을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지주가 되는 길을 터놓게 되고, 영세소농을 탈농시켜 전업농(대농)에게 농지를 임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연결되어 실업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도시로 몰려 드는 연간 30~60만명씩의 이농인구는 주택·교통·저임금·빈민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안은 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하고 새로운 농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새로운 법은 철저한 농민적 소유와 협업농을 중심으로 한 조합적 이용방식을 관철시켜야 한다(한겨레신문 평론, “농지임대차법 투기에 불 지른다”, 1990.3.22).

○ 세계일보 사설 임차농은 사실상 소작농을 뜻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를 합리화할 수 없을 뿐더러 최근 다시 이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다.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취득이 죄악시되는 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몸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소유와 그 임대차영농이 용인될 명분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행법인데도 사장시켜 오고 있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부채지주의 일소와 경자유전 원칙을 관철하는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1990.5.21).

4) 기타

(1) 농지확대 및 기반정비

○ 한주성(충북대 교수) 농업적 토지이용을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입지지대와 농민의 의사결정 등에 의한 주산지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농촌인구의 전출에 따라 방치된 농경지의 효과적 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토지이용형태와 지역개발의 방향”, 『토지와 개발』,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217면).

○ 농수산부 유휴농지와 간척지 임야 등을 매입, 주택재개발사업처럼 이들 농지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을 벌여 농지와 택지 공장용지 등의 지목으로 나눠 용도에 따라 경작농민이나 일반기업에 매도기로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를 소유주끼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바꾸어주거나 나누어 주는 교환·분합사업을 통해 집단화하여 영농작업 능력을 높여 나

야가기로 할 계획이다.

공사가 사업을 끝낸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매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 이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체류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농지를 전매하려 할 경우, 질병사고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고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체류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전매를 허용할 것이다(한국경제신문, 1990.6.20, 6면).

(2) 경영규모확대 : 농지유동화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의 규모성에 있어서 2.5ha~3ha이상 집단화된 농지는 영농기계화를 통해 50%이상의 노동절감과 30%이상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농규모의 확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농어촌진흥공사,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정책과제와 기준설정방향, 1990.11, 78면).

○ 장재우(전북대 교수) 농업구조조정으로서의 농지유동화를 정착시키려면,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농지가격의 급등을 억제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에 따른 투기적 요소를 제거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농지정책은 농지의 이용이나 생산력의 증진보다는 소유의 시점에 중점을 둬으로써 영세한 농지소유를 고정화시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지정책은 가능한 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농지유동화의 촉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의 농지관련법들을 이용시점(利用視點)강화의 방향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능한 한 제거해 가면서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차지주의(借地主義)를 행해 농지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개편 정리해 가는 것이다(한국일보 평론 『농업구조개선』 농지가 안정이 우선, 1990.11.3).

○ 농촌경제연구원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 농지상속의 “일자상속제도”를 도입해 상속과정에서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고 영농후계자가 된 상

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농지 구입할 경우 상속농지매매에 대한 조세감면 및 농지구입 금융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제7차경제개발계획 기본구상』).

○ 농수산부 가. ㉠ 농지의 세분화 방지방안으로 농지의 한자녀 단독상속의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등(10년 이내 영농 포기시 전액 추징, 10~20년 이내 포기는 50% 추징, 20년 이상 영농시 전액 면제)으로 유도하며, ㉡ 농사짓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사들여 전업농가 또는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농가에 농지구입자금(2년거치 18년 분할상환조건)을 지원해 매도할 방침(농수산부 주최 『농지소유상한 완화와 농지의 종합적 활용대책』 공청회, 1991. 7.24; 서울신문, 1991.7.25. 3면 해설).

나. 신농정추진의 일환으로 ㉠ 전업농의 농지 장기임대차시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선급금 대상농지를 현재에는 “1ha 미만의 전업코자 하는 농가의 농지”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으며, ㉡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유동화 지원사업에서 임대차사업 분야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사업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토록 하여 앞으로 전업농이 농지를 빌어 영농규모를 늘리는 경우의 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한국경제신문, 1993.6.17, 26면).

○ 남구희(농어촌진흥공사 부사장) 경자유전폐지론이나 임차농으로 규모의 확대를 모색하는 소유와 경영 분리론 등은 우리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지유동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영농규모의 확대를 기하는 것이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기본과제이다(농민신문 평론, “농지문제와 농지유동화사업”, 1992.7.13).

(3) 농지기본법 제정여부

○ 농수산부 가. 헌법의 기본정신 가운데 하나인 ‘경자유전 원칙’은 고수하되 ‘경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농민 외에 농업관련 단체나 기업 등에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농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임. 이에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농지에 관한 법규를 통합 정비하고, 농협 등 생산

자단체, 농약·씨앗 등 농업자재 생산업체, 농업관련 연구·실험기관 등을 농지소유허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농지기본법 시안, 1992.10.10).

나. 농지소유의 규제완화와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전용범위의 확대 등 농지이용 규제완화 범위 등은 농지기본법(가칭)을 제정, 지정할 계획이다(1993.3.31, 농림수산부 업무보고).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문란해진 농지제도를 정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영세소농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관계기본법으로서 농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 『농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989.6.20).

○ 장상환(경상대학교수) 농지법(안)의 기본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보장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제반법률을 농지법에 통폐합하여 새로운 농지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농지법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 『농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989.6.20).

2. 각계의견의 정리 및 평가

농지제도에 관한 각계의 입법의견을 정리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체계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지제도란 결국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정법상 어떻게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가 하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지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바람직한 현실적 농업형태가 자작농 형태냐 전업농형태냐 아니면 기업농형태냐 하는 관점과 현재의 농업실태에 관한 현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의견이 달라진다. 자작-가족농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견해와 전업-대농체제 육성성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로 지금까지의 각계 입법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고 「용자유토」의 이용 중심의 혁신적 입장에서 제기되는 내용은 /()로 표시한다).

| | 자작-가족농체제 유지의 견해 | 전업 - 대농체제 육성의 견해 |
|-----------|--|--|
| 농정의 방향 | 영세가족농보호, 농가소득 확대 농민의 자립기반 확보, 이농, 휴경지확대 방지, 농지의 절대면적 확보, 자작지주의 | 전업농 육성, 농업생산성 제고, 대외경쟁력확보, 도시가계 수준확보 기계화, 집단화 영농 육성 우량농지 중심 생산력 위주 자작지주의에 차지주의 가미 |
| 경자유전원칙 | 유지 찬성 | 완화 /(폐지) |
| 경자의 범위 | 자경농민, 농사조합 | 농어민단체, 영농관련단체 등 포함 |
| 경자의 성격 | 자작-가족농 | 전업-대농, 집단영농/(기업농) |
| 소유 상한 | 3ha(영농규모확대를 위한 예외 제한적 인정) | 5-10ha(20ha 또는/상한철폐) 진흥지역내 예외 허용 |
| 농지의 보유 요건 | 자경농민외 보유불허 | 기계화 대경영을 위한 임대차로 관리, 위탁경영, 영농법인 허용 |
| 영농법인구성 | 자경농민(1ha미만) | 자경농민(제한폐지) |
| 소유의 분리 | 자경, 자영 | 위탁영농, 임대차의 활성화 |
| 농지매매증명제 | 제도강화/자유화 (재산권보호) | 발급요건 완화 (투기방지 보완) |
| 농지의 보전 | 필지보전방식, 절대면적확보 전용허가제 유지 기왕의 농지는 엄격심사후 전용 | 권역별보전방식, 우량농지중심 영농관련시설 전용완화 비진흥지역 전용완화 |
| 농지임대차 | 철저한 농민소유와 협업농중심 임대차 불허 | 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유도 장기임대차 선급금대상농지 무제한 |
| 영농규모의 확대 | 농지유동화사업으로 확대 | 소유자격완화, 임대차, 유동화사업 |
| 기반 정비 | 필지별(소유별) 경지정리 | 대구획(1-3ha 단위) 종합정비 |
| 부작용방지책 | 도시상업자본의 침입근절 | 불법취득 엄벌, 세제, 전용제한, 목적외사용시 환수 |
| 법체계의 정비 | 농지개혁법, 취지 유지 | 새농정에 따른 새체제의 기본법 |

농지제도의 개선은 농가의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지의 유희화현상 증가, 농업인구의 격감과 고령화, 자작농 비중의 저하, 비농업목적의 토지 수요증가, 농지임차료 하락 및 임대차 면적의 증가, 경지이용 구조의 절약형 성장작목 위주로의 변화 등의 현상을 두고 이를 어떠한 원칙과 목표하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농지제도에 관한 입법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별되고 더 나아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종래의 토지정책과 농지제도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견해들은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완화하는 데에 농지제도의 방향을 두고 있다. 따라서 농지개혁 이래로 유지되어 온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 농업현실은 자작농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본전제에 서고 있다.

그러므로 농정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법론적으로는 자작농체계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농지관련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전제를 넘는 혁신적 신농정에 입각한 법령의 제·개정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자본의 농촌유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며, 농민의 의한 농민을 위한 농지제도의 운영을 바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농지의 경영규모의 확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강화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고, 이는 결국 적극적인 생산성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점에는 소극적이게 된다.

한편, 기존의 농지제도를 혁신하여 새로운 농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적극적 제도개선 내지 개혁의 입장에 따른 견해들은 전업-대농육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내지 집단영농을 주장하며, 농지의

소유권적 측면보다 이용권 중심의 제도로 개선하고, 농지의 절대면적보다는 농업생산력에 기준을 둔 우량농지 중심의 제도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자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시의 일반자본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탄력적으로 그 유입을 제도화하여 유도하는 입장에 선다. 농업이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해 도시가계수준의 소득을 농촌가계에 보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비농민의 농지투기문제와 소유상한 확대 및 자격 완화를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 완화 내지 궁극적 폐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각각 다른 각도에서 취급하여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한계영농규모 이하의 농민은 결국 농촌에서 이탈하게 되고, 정예화된 전업농 중심의 농업이 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이농인구의 고용이라는 문제와 유휴지 및 상대적 비우량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절대적 농지면적의 감소는 주곡의 자급달성과 국토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기존의 농지제도의 장점을 불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농지가 투기장화되는 우려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곤란성과 진흥지역 선정과 이에 따른 비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의 합리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그냥 둔 채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법체계 내지 해석상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소유상한 철폐이후 농지확대가 1.6ha를 넘지 못한 예를 본다면, 소유상한의 대폭적 확대 내지 철폐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조합, 위탁경영회사, 기타 농어민단체의 농업목적의 농지이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양측의 의견들은 소유를 통한 농지의 보전과 농가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농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농지이용의 극대화, 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농가수익보장으로 전업농 중심의 선도적 경영을 통한 농촌경제력 회생에 중점을 두고 농촌을 계속 육성할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에 달려 있다.

Ⅲ. 현행법, 관련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

1. 현행법

헌법상에는 제23조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함께,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3조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법률로 구현하고 있다.

농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는 농지개혁법(1949), 농업기본법(1967)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등이 있다.³⁾

농지제도 관련 법체계와 주요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관련법체계》

| | | |
|------------|---|--|
| 농 지 | | |
| 구분 관계제도 | 도시계획구역내 농 지 | 도시계획구역외 농 지(a) |
| 소유 및 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혁법(b) • 국토이용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혁법 • 국토이용관리법 |

3) 개별법령을 농지, 농정, 기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지〉 농지개혁법령, 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관한특례에관한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령, 지력증진법령, 농지임대차관리법령, 농지담보법령(93.6.11 폐지)

〈농정〉 농업기본법, 농촌진흥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령,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기타〉 산업기지개발촉진법령(제15조), 지방세법(제221조),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 14),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제12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 | |
| 전용 및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법(c) • 농발법(d)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법 • 농발법 • 국토이용관리법 |
| 임 대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임대차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임대차관리법 |
| 확대 및 기반 정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공유수면매립법(f) • 농촌근대화촉진법 • 농지관리기금법(g) |
| 경영규모 확 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관리기금법 • 농발법 |

- (참조) a) 도시계획구역외 농지는 경지지역 농지 및 기타지역 농지이며, 기타지역 농지의 경우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도 받음.
- b) 농지매매증명 관련규정은 적용배제
- c)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약칭한 것임
- d)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약칭한 것으로, 동법의 도시지역 적용은 진흥 지역 설정이 가능한 녹지지역만 해당됨
- e) 녹지지역 관련규정 적용. 건축법 등에 의한 규제도 포함됨.
- f) 농업목적의 간척인 경우 적용
- g)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약칭한 것임. 농지재개발과 관련됨.

《농지관련제도의 주요내용 및 관계법》

| 제 도 | 주요내용 및 관계법 |
|----------------|--|
|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자유전(헌법 제121조) • 농지소유자격 - 시·구·읍·면 6개월이상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농발법 제6조) - 학교, 농업연구기관, 공공기관 - 개간·간척한 자(농지개혁법제25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상한 : 농가당 3ha - 농업진흥지역 20ha • 농지매매증명제도(도시계획구역 안은 적용배제) |
| 농지임대차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의 문서화 및 신고의무화 : 60일 이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 3, 4조) • 계약기간 : 최소한 3년 이상(법 제5조) • 임대료상한의 설정 : 시·군 조례로 설정 (농지임대차관리법) |
| 농지보전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별 : 절대·상대농지제도(농지보전법) • 권역별 : 농업진흥지역제도(농발법) |
| 농지전용규제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제도(농지보전법 제4조) • 농지전용협의제도(농지보전법 제4조, 제5조) • 농지전용신고제도 • 임의이용제도 : 다년생식물, 관상수 재배 |
| 농지기반정비 및 확대 관련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기반정비 : 농지개량사업(농촌근대화촉진법) • 농지확대제도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간지개발촉진 - 농업목적의 매립(공유수면매립법) - 개간·간척농지 |
| 농지경영규모 확대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재 원 : 농지관리기금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 농지관리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관리위원회(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 농지원부제도(농지보전법 제14조) |
| 농지조세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 농지세 : 소득과세 • 종합토지세 : 재산과세 • 토지초과이득세 : 지가상승분의 50% |
| 기타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비제도(농지보전법) • 전용부담금제도 : 공시지가의 20%(농발법) |

2. 관련입법안

1) 농지기본법(가칭) 제정안

(1) 제정이유

농림수산부는 현행농지제도는 자급자족 시대에 걸맞도록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등으로 개방화 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농지소유 상한선과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이용 규제는 완화하며 영농규모를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꾀하고, 소규모 영세업의 형태로는 농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으며, 농지거래에 불편한 규제가 많아서는 영농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소유 상한과 자격을 확대해 대농을 육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담보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8개 법률 중 농지관련 사항을 통합하고, 농지이용과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안의 체계

제 1장 총칙 : 농지, 농민, 자경, 자영 등의 용어 정의

제 2장 농지의 소유제한과 권리이전

제 3장 농지의 보전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농지의 전용제한

제 4장 농지의 이용 : 성실경작, 대리경작, 한계·유휴농지의 개발

제 5장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

제 6장 농지의 경영규모 확대 : 세분화 방지, 임대차장려금, 농지신탁 등
제 7장 농지의 생산기반 정비 : 개간·간척, 교환·분합, 지력증진, 재
개발

제 8장 농지관리 :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원부

제 9장 위법농지의 처분 : 위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매도·매수 등

제 10장 농지관리기금

제 11장 보칙 : 농지담보, 벌칙 등

주요내용은 아직 농림수산부의 시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의 체계에 따라

- 농지소유 상한성의 확대 : 20ha
- 농지소유자격 확대
- 농지이용 규제완화
- 농지의 세분화 방지 : 농지의 분할상속을 금지
-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하는 조항 삽입
- 가족농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집단경영체로 바꾸어 나아가는 조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농수산부, 동아, 1993.1.14, 7면).

② 관련법령 제·개정

농지개혁법, 지력증진법, 농지담보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7개 법률이 폐지예상되고, 농지기본법과 농어촌정비법(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추진법)을 제정하며, 농어촌진흥공사법 중 농지관리기금 조항을 삭제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의 생산기반정비 추진법으로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2) 생산녹지법(가칭) 제정의견

도시내 농지는 미래의 도시용지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농지가 갖는 다양한 기능적 측면 즉, 환경보전기능, 방재기능, 자연경관보전기능, 교육기능 등에 대한 고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도시농지의 계획적·권역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 제안한 입법취

지이다.

생산녹지법(가칭)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도시농지의 계획적 관리
- 생산녹지지구 :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구역내 농지중 장기영농희망자가 신청한 일단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도시계획사항 : 생산녹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항 규정
- 도시계획변경 : 생산녹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규정
- 행위제한(허용행위) : 영농행위에 한정, 도시농원 설치 가능, 기타 경미한 행위
- 생산녹지매매 : 매매신청조건(예:경작자 사망), 절차 규정, 자치단체의 선매권 규정
- 매수녹지관리 : 시장·군수가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영농
- 기타 : 행위제한 해제, 표식의 설치, 원상복구명령, 타법률과의 관계
- 관계법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생산녹지지구 농지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
농지보전법(생산녹지지구 적용대상에서 제외)
농발법(생산녹지지구를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3) 토지이용규제법을 통폐합안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 규제 법률의 통폐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현행 10개에서 4개(도시, 개발, 준보전, 보전지역)으로 단순화
- 준보전지역 : 개발 이용가능 토지를 30%로 확대/ 전용규제 완화
- 농지 및 산지관련법률은 농지기본법과 산지기본법으로 일원화
- 농지통작거리 규제 완화
- 산업임지 전용절차 간소화 (신경제 5개년계획)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어촌 고용창출지역(농공단지, 주거용지)으로 활용.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농수산부장관이 농업용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제외한 잔여농지와 준보전 임지는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 지정
- 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방식을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제도)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제도)으로 전환
- 96년까지 벼농사 1백% 기계화

4)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중 농지관련부문

(1) 허가전용

○ 농수산부 가.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현재 상대농지와 절대농지로 구분하여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해 농가주택, 축사 등 농업시설을 짓거나 인삼, 약초 등 다년생작물재배가 쉽도록 하는 등 농지공개념제도를 확립키로 함(조선, 1990.2.3, 2면; 동아, 1990.2.2, 1면).

나.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에 관련하여 ① 시장·군수의 농지전용허가범위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1개 기업당 시장·군수의 농지 전용 허가범위를 1,500평방미터(450평)미만 → 10,000평방미터(3,000평)로 확대하고, ② 농지 초지 조성을 위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권한 위임(20ha까지)을 확대 : 시장·군수 : 1ha 미만 → 10ha 미만까지 (재위임), 시·도지사 : 5ha 미만 → 20ha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③ 신고전용대상농가의 범위에 축산농가 포함 : 농지원부가 없는 축산농가가 축사시설 증·개축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3,000평방미터 초과부분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를 50% 부담하여야 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며, ④ 전용된 농지의 타용도 변경 제한 :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현행 5년으로 되어 있어 승인 받지 않더라도 동 기간이 경과하면 타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가수요 발생, 농지투기재연, 전용질서 문란 우려, 따라서 전용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연장(전용후 5년 → 8년)할 계획임(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1993.3.25).

(2) 신고전용

○ 농수산부 ① 농가가 농지에 양축, 양어 등 농어업용 시설 설치시 1,000평까지 신고 전용, 동 면적 초과분은 허가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양어 등 농어업용 시설을 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면적 범위 확대(1,000 → 2,000평)할 계획임

② 민간연구기관의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관련 연구시설로 농지전용시 2,000(현행 허가사항)평까지는 신고전용 허용할 계획임 (경제행정규제환화계획, 1993.3.25).

5) '93년도 정부입법예정 법률안

<농수산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기본법(제)/ 농어촌정비법(제)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건설부>

국토이용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3. 외국의 입법례

1) 일 본

제2차대전후의 토지관련법은 자작농적 토지소유를 만들어 낸 농지조정법(1946년 개정), 자작농창설특별법 제정(1946), 자작농의 생산조건을 정비를 도모한 토지개량법(1949), 이 법들을 정비한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1951)과 농지법(1952)을 들 수 있다. 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1968년, 이하 농진법)의 제정, 농용지이용증진법 제정(1980년), 특정농지대부법 제정(1989년), 최근의 농업경영기반강화법안과 특정농산촌활성화법안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1993.6.9)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도시농업지구에 관하여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및 미래의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염두에 두고

영농을 전제한 도시농업지구를 생산녹지지구로 지정한 생산녹지법(1974)이 있다.

소유자격제한에 있어서 1947년 농지개혁 이래 1962년부터 197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농업단체 등의 농지소유 허용폭을 넓혀 왔다. 그러면서도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는 제외하였으며, 농사조합법인에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농지소유상한에 관하여는 제정농지법에는 평균 3ha, 재촌지주는 평균 1ha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62년의 제1차 농지법 개정으로 자가노력인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70년 제2차 개정으로 상한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농협의 농지신탁제도가 있고, 농지법의 개정과 농용지이용증진법의 제·개정 및 특정농지대부법 제정으로 임차료 최고액 통제를 폐지하고, 10년간 임대금액을 정부가 일시에 선불하며, 집단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차를 촉진하고, 농가규모확대를 위한 농지 이용권의 집적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휴지 활용으로 전원농원을 조성 일반인에게 임대 경작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농업경영기반강화법안과 특정농산촌활성화법안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은 농지 1백75만ha의 유동화와 바람직한 경영체제의 육성 및 법인화를 중심으로 향후 10년 동안 다른 산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과 노동시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신정책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농업·농촌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근대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정비에관한법률(1969년 제정)이 있다. 시·정·촌 단위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우리나라의 우량농지 중심의 지정방식이 아닌, 대부분의 농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농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과 중복지정되는 형식이므로 농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이 필요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진흥지역을 조정해 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대만

대만의 농지법제는 토지법과 자작농창설법 및 농지관련조례로서 규정되고 있다.

토지법은 소작료 규제, 자작농 발전 지원을 내용으로 1930년에 제정되어 1955년에 개정되었다. 자작농창설법(1951년)은 공유경지불하에 관한 법률이며, 농지관련 조례로는 1949년의 '경지375감조 조례', 1953년의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실시조례', 1973년의 '농업발전조례'(83년 개정)이 있다.

소유상한은 경자유기전실시조례(1953년)로 정부가 답3정보, 전6정보 초과농지는 매수하여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후 토지법개정(1955년)으로 10인가족 부양면적으로 하고 있다. 경지의 범위는 자경농민에서 농업발전조례(1973년)에 의해 공동경영, 위탁경영도 자경으로 인정하여 경영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1973년부터 농지소유자격의 완화에 따라 공동경영, 위탁경영, 합작농장(농업생산법인), 농민단체와 주식회사(일정 자본범위 내)에 대하여도 일정면적 범위의 농지취득을 허용하였다.

경지375감조조례에 의하여 소작료는 조수입의 37.5% 이하로 규제하였고, 이후 개정토지법(1955년)에서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경작권을 강화하고 임대료는 지가의 8%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개정 농업발전조례(1983년)에는 위탁경영에 375감조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규모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자유기전」의 농지이용정책이 정착되어 있으며, 농지이전이나 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토지법에서 토지분류를 규정하고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등급별로 전용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1~8등급의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농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이 금지되고, 9~26등급은 전용목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기관의 허가에 의하여 전용이 가능하나 이것도 비도시토지이용관리규칙(1976년)에 의한 용도별 이용규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정하고 있다.

대만은 필지보전방식을 엄격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구역계획법(1973년)에 의한 비도시토지이용관리규칙으로 전국적인 용도구분을 실시하고 그 용도별로 토지이용규제를 행하고 있다.

IV. 입법방향

1. 농지관련법의 정비

1) 정비 대상

농지개혁 이후 체계적인 농지법의 부재상태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사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 결과, 농지개혁 당시 의도했던 자작농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한 농지소유제도 및 이용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은 이미 각계 입법의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현행의 농지관련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개발 등 농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중복·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현실과 괴리되는 내용도 존재한다. 또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업내부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함께 정부의 신농정정책에서 제기된 것처럼 장래의 농지제도에 관한 부분도 예상한 법제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법체계상으로 본다면, 기존 농지관련법률에 있어서 (1) 명목상 존재하는 규정, (2) 중복규정, (3) 상충되는 규정들은 정비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명목상의 규정으로 현실과 괴리되거나 선언적 상징적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는 ① 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규정(농업기본법), ② 농지개혁에 필요했던 제규정(농지개혁법), ③ 농지임차료의 조례고시 규정(농지임대차관리법), ④ 임대차계약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농지임대차관리법), ⑤ 대리경작자 지정규정(농지보전법) 등이 있다.

서로 중복되는 규정으로는, ① 농지의 개념 정의가 8개 법률에서 조금씩 다르게 6가지로 정의되고 있는 경우, ②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위원회와 농

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규정, ③ 농지개혁법과 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로 상충되는 규정으로는, ① 위탁경영 및 임대차 허용과 금지(헌법,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② 임차료 10%규정과 임차료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규정(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임대차관리법), ③ 농지매매시 '농가'와 '매수인'이 소유주체로 혼용된 소유한도규정(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④ 농지전용규정(농지보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⑤ 농지에 관상수 등 재배의 허용과 금지(농지보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농지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원칙 내지 방향과 관련하여 농지관련법의 정비시에 예상되는 쟁점사항은, 앞에서 살펴 본 쟁점별 각계의견의 경우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① 농지소유규제와 관련하여 농지소유 자격제한 폐지문제와 제한의 정도문제 및 농지소유상한의 폐지여부, ② 농지전용규제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제의 폐지여부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규제 폐지 내지 완화 문제, ③ 농지유동화 목표·방법과 관련하여 농지유동화를 통한 전업농육성에 목표를 두고 그 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방식과 임대차 등 이용권이전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또한 선별농가 집중지원방법과 평균농가 분산지원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 하는 정책적 문제, ④ 농지임대차와 관련하여 규제위주의 임차농민 보호에 치중하느냐, 전업농에 임차농지가 집중, 규모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느냐 하는 문제, ⑤ 한계·유휴농지의 소유·이용규제 대폭 완화여부 등이 주요쟁점사항으로 될 것이다. 이는 농지제도의 개선을 점진적 개혁으로 할 것인지 급진적 개혁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정책적 방법론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비 방법

이상의 농지관련법의 정비는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시도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농지제도의 기본법 제정 방법으로 기존 농지관련법을 통폐합하여 「농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법, 둘째, 일부 법률의 통폐합으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일부 법률만을 대상으로 통폐합하는 방

법, 셋째 관련규정의 개별 개정으로 현행 농지관련법의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만 개정하는 방법이다.

먼저, 새로운 농지기본법의 제정방법은, ① 농지제도의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기본이 되는 상위 기본법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혁의 성격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농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기존의 농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수정 내지 정책전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법령의 종합·정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부가적인 또 하나의 농지관련법을 추가시키는 데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② 이는 지금까지 9차에 걸쳐 입법 시도되었으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확고한 정책적 의지 내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③ 농지관련법의 통폐합은 최소한 6개 법률 이상이 폐지되고 나머지 법률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해당부서의 존폐와 직결되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고 각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농림수산부의 단독입법으로는 곤란하다는 현실상의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 ④ 그러나, 일관되고 체계적인 농지제도와 장래의 농업에 관한 규범적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규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점은 틀림이 없으며, 농업관련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고, 분산되어 규정된 법률체계하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책수행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일부 통폐합 방법은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률을 통폐합하고 부처간에 중첩된 법률은 상호조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이다. 우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 소관의 법률로 볼 수 있는 현행 농지개혁법, 농지보전법,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먼저 통폐합하고, 나머지 법률은 부처간 조정을 거쳐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지만, 3개법이 통폐합되더라도 타법률과의 관련 규정은 부처간 조정을 어차피 거쳐야 하고, 아울러 필요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 나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는다.

마지막으로 관련규정의 개별조정은 현행 농지관련법의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법령상의 중복·상충·사문화된 규정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 개별법률의 개정방식을 통하여 농지제도 관련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률개정의 일반적인 방식이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한계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 계속 존치될 가능성이 있고, 농지관련법이 대부분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성격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법운용상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 도시농지의 보전문제

1990년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의 면적(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말하므로 시·읍지역의 행정구역면적과는 차이가 있다)은 국토면적의 21.06%에 이르는 2,090,877ha이다. 동지역내의 농지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11%에 이르는 229천ha이다.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의 농지면적은 전국농지의 감소추세와는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계속적 농지전용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기존의 농촌지역이 도시에 계속 편입되고 있거나, 신시가지 건설을 위한 도시지역의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공간적 범위의 확대는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농지전용규제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경우에는 도시의 균형적 확산이 가능하지만, 규제가 엄격하게 실시될 경우 도시공간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⁴⁾

도시농지는 국토이용계획과 농업계획과의 중간영역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일방에 속하기도 하고, 소홀히 될 수도 있으며, 이중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시농지의 성격상 이의 보전문제는 도시농지가 가지는 역할과 관련하여 볼 때 신중한 검토가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시내 농지활용 및 보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2-18), 1993.2, 29쪽.

필요하다. 이는 전술한 생산녹지법의 제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부가 진흥지역내의 농지와 동일한 정도의 보전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상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에 의존할 수도 있다. 농림수산부가 고려하고 있는 시도별 농지종합이용계획제도상의 「농업성장지역」과 「다목적 농업지역」별 농지종합계획수립으로 농지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이를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① 중간지, 산간지의 경우라도 토지의 적성등급이나 경사도를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농지는 도시내 농지라 하더라도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도시내 농지의 경우는 중간지 → 산간지 → 평야지의 순으로 전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도시내 중간지와 산간지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구(생산녹지법을 제정하는 경우)에서 제외하여 활용적 측면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문제, ② 농지전용제도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업관련시설 목적의 신고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도시농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설치목적의 전용이 아닌 것은 농업관련시설의 설치목적이라 하더라도 장기농지관리계획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⁵⁾, ③ 자치단체의 권한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농지관리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자치단체에 전용허가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 또는 도시내 농지의 관리·보전에 자치단체가 전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향후 농지에 대한 관리방식이 권역적 보전에 초점이 두어질 것이고 절대·상대농지제도는 과도기적으로 적용될 것을 고려한다면, 도시내 농지의 경우 진흥구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에 준하는 전용허가권한(660평방미터-1ha)을 시장 군수에 부여하는 방안이고, 후자는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법이나 농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관리는 근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야 하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방안이다.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계서, 151쪽.

3. 농지관련법 정비의 선결문제

농지제도의 근본적 문제로서 ① 경자유전의 원칙의 유지문제(헌법 제121조 제1항), ②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제도의 정착문제(헌법 제122조 및 제123조 제1항 관련), ③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의 마련문제(헌법 제121조 제2항 관련)가 있다. 이는 헌법상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지관련법의 정비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법체계상의 선결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과 농지제도의 근본이념이 없이는 농지기본법의 제정이나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는 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으로 나타난 바처럼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견해가 분분하고 이는 전체적인 농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농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나, 거시적인 농업정책의 경우는 헌법 및 농지관련법에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분야에 관한 선결을 통하여 농지관련법의 정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법 또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지제도에 관한 법률의 정비는 정부의 신농정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헌법상의 관련조항을 유지를 전제로 하여 농지관계법을 정비한다고 한다면, 첫째, 농지제도의 전환여부 또는 전환방향을 확정하여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실현내용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경우까지가 최대한의 완화 폭으로 그 규정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농업보호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거시적인 국가의 산업으로서 농업보호를 통한 농민의 보호인지, 아니면 자작농민의 보호를 통한 농업의 보호 육성인지 그 중점에 따라 실현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전자는 경쟁력과 생산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며, 농지의 이용적 측면

에 비중을 두게 되고, 후자는 비농민 내지 도시자본으로부터의 보호와 이용보다는 농지의 소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셋째,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보전의 문제는 이를 일반 토지성에 비중을 두고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농지성에 그 중점을 두고 관리,보전할 것인가 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라는 측면,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된 가치 중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게 된다.

어쨌든 단일법의 제정이든, 일부 통폐합이든, 아니면 개별입법을 통한 개정이든간에 이러한 원론적 체계적 구조를 확립한 후에 관련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하나의 관련분야 법령에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수개의 부처가 관련된 국가적 업무를 조화있게 수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입법이론적 공리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농지분포현황(1990)》

(단위 : 천ha, %)

| | 합계 | 도시 지역 | 취락 지역 | 경지 지역 | 산림 보전 지역 | 공업 지역 | 자연 환경 보전 | 관광 휴양 지역 | 수산 자원 보전 지역 | 관공 촉진 지역 |
|--------------|-----------------|---------------|-------------|---------------|----------------|----------|----------------|----------------|----------------------|----------------|
| 국토이용 계획면적 | 9,929 (100%) | 1,345 (14) | 63 (0.5) | 2,593 (26) | 5,065 (51) | 8 - | - | 18 - | 52 (0.5) | 146 (1) |
| 농지면적 | 2,109 | 229 | 22 (1) | 1,658 (79) | - | - | - | 200 (9) | - | - |
| 비율 | 21.2 | 17.0 | 34.9 | 63.9 | - | - | - | 3.4 | - | - |

자료 : 농업구조정책국, 「농업진흥지역 관련 자료」(1992)

- 전국의 농지면적 : 국토면적의 21.2% • 경지지역내 농지 : 전국농지의 79%
- 도시지역내 농지 : 전국농지의 11% • 기타 용도지역내 : 전국농지의 10%

《임차농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

| 연도 | 임차농지 | | | 연도 | 임차농지 | | |
|------|-------|-------|------|------|-------|-----|------|
| | 총면적 | 임차지 | 임차지율 | | 총면적 | 임차지 | 임차지율 |
| 1945 | 2,207 | 1,470 | 66.0 | 1980 | 2,196 | 461 | 21.3 |
| 1949 | - | - | - | 1981 | 2,188 | 488 | 22.3 |
| 1956 | 1,958 | 158 | 8.0 | 1982 | 2,180 | 545 | 25.0 |
| 1959 | - | - | - | 1983 | 2,167 | 581 | 26.8 |
| 1960 | 2,025 | 273 | 13.5 | 1984 | 2,152 | 609 | 28.3 |
| 1965 | 2,256 | 370 | 16.4 | 1985 | 2,144 | 654 | 30.5 |
| 1970 | 2,298 | 408 | 17.6 | 1986 | 2,143 | 674 | 31.5 |
| 1974 | 2,238 | 296 | 13.2 | 1987 | 2,138 | 666 | 31.5 |
| 1975 | 2,240 | 307 | 13.7 | 1988 | 2,127 | 744 | 34.8 |
| 1976 | 2,338 | 316 | 14.1 | 1989 | 2,107 | 776 | 36.5 |
| 1977 | 2,231 | 406 | 18.2 | 1990 | 2,109 | 788 | 37.4 |
| 1978 | 2,222 | 440 | 19.8 | 1991 | 2,091 | 782 | 37.4 |
| 1979 | 2,207 | 437 | 19.8 | 1992 | 2,070 | 770 | 37.2 |

《연도별 평균임차료율과 임차료율 분포》

(단위 : %)

| | 임차료율 | 임차료율 분포 | | | | | | |
|--------|------|---------|------|-------|-------|-------|-------|------|
| | | 무상임차 | 1-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이상 |
| '92 | | | | | | | | |
| 논(일모작) | 25.3 | 3.3 | 16.5 | 47.9 | 24.1 | 6.5 | 1.6 | 0.1 |
| 논(이모작) | 20.7 | 1.8 | 28.3 | 33.6 | 26.6 | 8.0 | 0.4 | 1.3 |
| 밭 | 8.3 | 17.9 | 63.2 | 10.0 | 3.7 | 1.7 | 0.9 | 2.6 |
| '91 | | | | | | | | |
| 논(일모작) | 30.3 | 1.7 | 14.5 | 31.3 | 30.3 | 16.9 | 4.6 | 0.7 |
| 논(이모작) | 24.5 | 1.2 | 24.9 | 25.7 | 27.3 | 16.1 | 2.8 | 2.0 |
| 밭 | 9.8 | 18.1 | 59.2 | 12.0 | 4.7 | 2.3 | 0.8 | 2.9 |
| '90 | | | | | | | | |
| 논(일모작) | 33.1 | 3.2 | 13.0 | 20.3 | 27.1 | 29.5 | 5.9 | 1.0 |
| 논(이모작) | 25.9 | 1.1 | 23.1 | 22.3 | 25.4 | 23.1 | 24.2 | 0.8 |
| 밭 | 11.0 | 16.7 | 56.2 | 13.8 | 5.9 | 3.4 | 1.4 | 2.6 |
| '89 | | | | | | | | |
| 논(일모작) | 33.9 | 2.3 | 14.6 | 18.2 | 23.7 | 32.1 | 8.8 | 0.3 |
| 논(이모작) | 29.1 | 8.1 | 16.6 | 17.3 | 25.1 | 23.6 | 27.4 | 1.9 |
| 밭 | 12.5 | 16.9 | 55.9 | 12.2 | 7.4 | 3.8 | 1.6 | 2.2 |
| '88 | | | | | | | | |
| 논(일모작) | 35.7 | 2.4 | 10.4 | 18.9 | 24.8 | 35.0 | 7.5 | 1.0 |
| 논(이모작) | 27.8 | 3.1 | 19.5 | 17.9 | 31.1 | 24.5 | 3.9 | 0.0 |
| 밭 | 13.4 | 16.2 | 55.2 | 15.6 | 5.8 | 4.1 | 1.7 | 1.4 |

자료 : 농가경제조사표본농가에 대한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

(단위 : %)

| 연 도 | '92 | '91 | '90 |
|-----------|------|------|------|
| 평 균 | 37.2 | 37.4 | 37.4 |
| 0.5ha 미만 | 27.5 | 28.3 | 26.8 |
| 0.5~1.0ha | 27.3 | 30.2 | 31.0 |
| 1.0~1.5ha | 33.7 | 33.8 | 36.0 |
| 1.5~2.0ha | 34.8 | 36.8 | 37.7 |
| 2.0ha 이상 | 49.0 | 46.5 | 44.1 |

《연령별 임차지 비율》

(단위 : %)

| 연 도 | '92 | '91 | '90 |
|--------|------|------|------|
| 평 균 | 37.2 | 37.4 | 37.4 |
| 30세미만 | 51.3 | 46.9 | 34.9 |
| 30~40세 | 35.6 | 40.3 | 37.2 |
| 40~50세 | 40.5 | 39.5 | 39.2 |
| 50~60세 | 38.6 | 37.6 | 37.5 |
| 60세이상 | 34.6 | 34.6 | 35.9 |

《외국의 농지임차료와의 비교》

(단위 : 원/평, 원/10a, %)

| | 한 국 | 일 본 | 대 만 | 미 국 | 프랑스 | 영 국 | 독 일 |
|--------|---------|---------|---------|-------|-------|-------|--------|
| 농지가격 | 18,400 | 38,400 | 50,700 | 340 | 870 | 1,990 | 3,880 |
| 임 차 료 | 186,000 | 120,000 | 114,000 | 8,500 | 4,900 | 4,500 | 11,000 |
| 임차료/지가 | 3.4 | 1.0 | 0.75 | 8.3 | 1.9 | 0.8 | 0.9 |

주) 농지가격 조사연도 : 한국, 일본, 대만은 '91년. 그외 나라는 '89년

임차료 조사연도 : 한국, 대만은 '91년, 일본 '89년, 그외 나라는 '83년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 분 야 |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
|------------|--|
| 憲 政 |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
| 統一·外交·國防 |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
| 內務·地方行政 |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
| 社會·文化·教育 |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
| 產 業·經 濟 |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
| 農 林·水 産 |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
| 建 設 |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
| 科學技術·交通·遞信 |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
| 環 境·保 健 |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
| 法 院·法 務 |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

1. 최근입법의견 목록

(1993. 4. 16 ~ 1993. 6. 15)

- ◎ 憲 政 63
 - 개정공직자윤리법관련 입법의견
 - 국회법 개정의견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정당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統一·外交·國防 67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 입법의견
 - 국제협력요원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군관련법 개정의견
 - 군예산 및 군전력증강사업관련 입법의견
 - 군인사관계법 개정의견
 - 민방위법 개정의견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병역의무의특별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북한관련법 개정의견
 - 상훈법 개정의견
 - 순직예비군보상관련 입법의견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개정의견

- ◎ 內務·地方行政 73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민원처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소방본부·민방위통합관련 입법의견

○ 신원증명서제도관련 입법의견

◎ 社會·文化·教育 75

○ 가내근로법(가칭) 제정의견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고용보험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법 개정의견

교육제도개선

부정입시방지제도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시간제 근로자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의 수사권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의견

○ 도시공원법 개정의견

○ 문화관계법 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의견

○ 산업기술교육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아동복지관계법 개정의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

○ 영화산업관련 입법의견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안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촉진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개정의견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견
- 학교보건기능강화관련 입법의견
- 학원관계법 개정의견

◎ 産業・經濟 89

- 관세법 개정의견
-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에 관한 입법의견
-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부부간 상속·증여세에 관한 입법의견
-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의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개정의견
- 상속세법 개정의견
-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수출입관련법 개정의견
- 외국인토지법 개정의견
- 은행법 개정의견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재벌그룹업종전문화관련 입법의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의견

- 종합토지세관련 입법의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지적재산권관련법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통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 農林·水産 101
- 농지관계법에 관한 입법의견
 - 산지법(가칭) 제정의견
 - 양곡관리법 개정의견
 -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관한 입법의견
- ◎ 建 設 103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의견
 -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안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견
 - 건설업관계법 개정의견
 - 개정건설업법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의견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택임대전문제도관련 입법의견
 - 지역균형발전법(가칭) 제정의견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토지관련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 ◎ 科學技術·交通·遞信 | 112 |
|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 |
|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 ○ 원자력안전규제관련 입법의견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정의견 | |
| ○ 정부출연연구소제도관련 입법의견 | |
| ◎ 環境·保健 | 115 |
| ○ 공중위생법 개정안 | |
| ○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정의견 |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관련 입법의견 | |
|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
| ○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의견 | |
| ○ 개정약사법시행규칙관련 입법의견 | |
| ○ 에이즈예방법시행령 개정의견 | |
| ○ 지하수법(가칭) 제정의견 | |
|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의견 | |
| ◎ 法院·法務 | 119 |
| ○ 마약관련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 ○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의견 | |
| ○ 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개정의견 |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2. 최근입법의견 요지

(1993. 4. 16 ~ 1993. 6. 15)

◎ 憲 政

○ 개정공직자윤리법관련 입법의견

-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고 처벌을 받는 조항을 둔다면 몰라도 일정직급 이상의 공직자만 재산을 공개하는 데 처벌조항까지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함(김중위 민자당의원).
-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범위의 비현실성, 처벌조항의 불공평성, 윤리위구성의 불합리성 등 일부조항이 합리성·현실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취지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사기저하 등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등록대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거부대상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을 경우 사실상 재산은닉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등록대상 범위의 확정문제도 “필요할 경우 추가등록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인 가운데 5인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한 규정은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고, 방대한 등록서류의 관리 등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다 짧은 시일에 급박하게 추진되어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임.
- 세비도 없는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공개는 권리는 주지 않고 의무만 지우는 것으로, 재산공개에 대한 부담때문에 시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도외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이민국 서울시의회의원).

: 서울 93.5.26, 4면; 서울 93.5.30, 3·4면, 동아 93.6.10, 4면; 경향 93.6.11, 4면; 세계 93.6.12,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제6호(67면) 참조.

○ 국회법 개정의견

- ① 3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의장은 당적없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 국회의 위상을 높여야 하고, ②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정기국회에서만 하도록 하고, ③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④ 국회개원일자를 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장, 한국법제연구원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법제세미나, 1993.4.28).
-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이 14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계법의 개정과 아울러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노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국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의 소리에 기울여야 할 것임(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개혁국회의 소임을 다하려면 국회의 관계특위와 상임위를 상설화하여 현안문제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협상을 거쳐 완벽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임. 또한 차제에 의원외교에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며 뚜렷한 목적도 없는 회기중의 해외여행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한국일보 사설).
- 회기중에는 지역구행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참할 수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기 해외여행을 금지하여야 함(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소위, 『의원윤리실천규범 보완에 관한 설문조사』, 1993.6.10).

: 세계 93.4.29, 3면; 세계 93.5.22, 5면; 한국 93.5.24, 3면; 세계 93.6.11,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참조.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개혁작업을 민간주도의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여 재야단체와 정부부처와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에 등록을 기피해온 재야단체와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미등록단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없애거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정부).
: 서울 93.5.25, 2면; 경향 93.5.27, 3면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① 정당활동을 병자한 선거운동 등으로 항상 문제가 되어온 사전선거운동은 사실상 정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을 없애야 하고, ②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포괄적 제한' 규정은 선거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므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접촉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③ 전국구제 대신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고려한 선거구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④ 선거구간의 인구불균형문제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번 선거법관계법 개정에서는 선거일자의 대강의 범위만이라도 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장, 한국법제연구원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법제세미나, 1993.4.28).
- 국회의원의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1백 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각종 기부행위금지규정을 평생시 까지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민자당).
-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을 통합하는 「공직선거법(가칭)」을 제정하고, 선거공영제의 확대방안 및 전국구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민주당).
- 지방자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오는 '95년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 경우 '95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에 대하여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이며, 기초와 광역의회후보를 모두 정당공천하거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민자당).

: 세계 93.4.29, 3면; 조선 93.4.29, 4면; 중앙 93.4.16, 20면; 국민 93.6.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제6호(66~67면), 제7호(58면) 참조.

○ 정당법 개정의견

- 정당의 비민주성은 하향식공천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① 조속한 시일내에 공천제도를 지구당주도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와 정당에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여 간접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②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정당법상의 중앙당과 일정수의 지구당확보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여야 하고, ③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은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의 당원자격제한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가입·탈퇴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하며, ④ 전국구제도의 헌법정신의 부합여부부터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장, 한국법제연구원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법제세미나, 1993.4.28).

- 중앙당을 설립하기 위해 창당해야 하는 지구당의 수를 현재의 5개 시·도 48개 지구당에서 3개 시·도 15개 지구당으로 줄이고, 서울로 한정된 중앙당의 소재지 제한을 철폐하며, 정당가입제한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미성년자 대상의 교원외에는 누구든지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가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 세계 93.4.29, 3면; 조선 93.5.16, 4면; 서울 93.5.1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 제6호(68면) 참조.

○ 정치자금에관한법을 개정의견

- 민주정치를 하려면 선거자금지출의 법정한도를 지키고 그 지출내역이 투명해야 하므로 ① 법정선거비용을 현실화하는 한편 그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② 정치비용의 지출명세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할 수 있

도록 하며, ③ 선거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충당하며 정당의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정당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장, 한국법제연구원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법제세미나, 1993.4.28).

- ① 지정기탁제의 폐지 또는 개선, ② 후원회제도의 소액다수주의로의 전환, ③ 기부금증여제(일명 쿠폰제)의 도입, ④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여야 함(민주당).
- 정치자금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연간 기부금이 중앙당 및 시·도지부후원회 5백만원, 지구당후원회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1회 1백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은 타인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기탁할 수 없도록 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
-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후원회활성화, 정당보조금의 합리적 배분 등 자금모금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소위, 『의원윤리실천규범 보완에 관한 설문조사』, 1993.6.10).

: 세계 93.4.29, 3면; 조선 93.4.29, 4면; 조선 93.5.16, 4면; 서울 93.5.16, 2면; 세계 93.6.11,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 제6호(68면) 참조.

◎ 統一·外交·國防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그동안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비쳐져 대국민 이미지가 좋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북괴'와 같은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은 검토할 방침이나, 야당측이 요구하는 '편의 제공죄' 및 '불고지죄'의 폐지는 국가보위차원에서 수용키 어려움(민자당).

: 경향 93.5.3, 2면

○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 입법의견

- 국민들이 안기부의 역할이 재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개혁입법차원에서 안기부의 정치사찰금지 명문화, 수사권축소 등 안기부법의 부분적 개편이 불가피함(민자당).
- 그동안 안기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법률상의 문제라기보다 운용상의 문제였으므로 수사권 폐지 및 예산공개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임(안기부).

: 한겨레 93.6.5, 1면; 세계 93.6.6, 1면

○ 국제협력요원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파견근무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대상자 중 의료·농업·기술분야 전문요원을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하여 병역특례혜택을 주는 대신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동안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서 보건·의료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임.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되는 해외파견 의사와 농업·기술분야 전문인력은 1개월의 기초군사훈련과 3개월의 국내직무교육을 받은 후 외무부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2년간의 해외파견활동을 하게 되며 귀국후 9개월간 국내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모두 37개월을 복무하게 되는데 앞으로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임(외무부).

: 세계 93.6.10, 21면

○ 군관련법 개정의견

- 문민시대에 걸맞는 군의 위상확립을 위해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관련법을 재정비할 방침임. 언론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① 군사비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구체화하고, ② 비밀지정권자를 격상시키며, ③ 고의적 누설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고, 군사시설 설정기준을 완화해 일반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공군

기지법」 및 「해군기지법」은 고도제한과 어로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 군용항공기지의 관할부대장과 국방장관이 각각 공군 및 해군기지구역도면을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공군기지법시행령」 및 「해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마련함. 또한, 「방어해면법」은 선박의 통행제한규정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체의 적자보전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국방부).

: 한국 93.4.17, 1면; 서울 93.5.14,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3면), 제3호(47면), 제6호(69면) 참조.

○ 군예산 및 군전력증강사업관련 입법의견

- 군전력증강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부정비리의혹 등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므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전력증강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예산중 방위비 비중을 낮추어 군축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해 내무부소관의 전·해경예산을 방위비에서 제외하고 비군사적인 성격의 안보관련경비도 관련부처로 이관할 방침임(민자당).

: 경향 93.4.27, 2면, 세계 93.4.27, 2면; 서울 93.4.27, 2면; 동아 93.4.27, 1면

○ 군인사관계법 개정의견

- 최근 사정대상으로 비화된 군인사비리에 관하여 비리제발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장군심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장군진급선발위원회를 국회국방위, 국방장관, 참모총장 등이 추천하는 현역 및 예비역장성들로 구성하고 진급선발위에서 추천된 후보를 국회국방위에서 검증,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는 '공개진급심사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함(이기택 민주당대표).

: 세계 93.5.3, 1면

○ 민방위법 개정의견

- 민방위대의 중심기능을 종전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난대비 차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이나 동원임무 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방위대원에게도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민방위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처분 위주로 크게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임(내무부).

: 동아 93.6.14, 30면; 세계 93.6.14, 22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방위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선정과정상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체 지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방위산업체 지정을 지양하고 기무사령부요원의 방위산업체 보안통제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함(민자당).

: 경향 93.6.12, 2면

○ 병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가족계획의 정착에 따라 독자의 의미가 퇴색한 데다 이들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8개월로 군복무기간의 단축혜택을 받고 있는 독자들의 복무기간을 일반병역의무자와 같이 26개월로 조정키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재수생의 편의를 위해 현재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입영연기 기한을 21세로 연장해줄 방침임(병무청).
- 내년부터 전역후 6년으로 되어 있는 일반예비군훈련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훈련시간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키로 함(국방부).
- 현행법상 일반수형자는 출소후 입영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장기대기시켜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시국사범의 경우 출소를 전후해 영장을 발부하여 징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최근 시국사건과 관련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생 및 가족

들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양심수의 군정집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현행법 규정에 위배되고 군에 대한 국민감정과도 맞지 아니하며, 특히 이들이 시국사건관련 '양심수'이기 때문에 일반형사범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시국관련구속학생 대부분이 2년 미만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했고 이들이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다 구속된 만큼 문민정부는 관계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임.
- '75년 이후 7차례나 개정·원상복귀를 거듭해온 「병역법시행령」은 병무행정상 타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운동권을 위협할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 왔으므로 다시는 신성한 국방의무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단안이 필요함(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미귀국자 및 부모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규정이 빈약하여 유학, 친지방문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나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기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과태료부과, 인허가 일시정지, 용자대출역제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임(병무청).

: 중앙 93.5.10, 1면; 한국 93.5.12, 29면; 조선 93.5.13, 30면; 국민 93.6.8, 21면; 세계 93.6.8, 21면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방위산업체병역특례자로 편입되었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복무단축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노동자의 기본권제약과 '노동현장의 병영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조수원 대우정밀 해고근로자).
- 현재의 군복무 위주의 국방의무개념을 선진국과 같이 누구나 어떠한 형태든 국가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봉사제'의 개념으로 확대·전환하여야 하고 사회봉사역 복무대상 분야를 경찰(전경), 교도대원, 공중보건의, 연구요원, 산업체기능요원 등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새로 산림작업

· 보호·감시, 우편·집배, 소방, 지방행정 등 7개 분야를 추가하는 한편,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인 24만원 초과분 전액을 현역병 복무기간동안 징수하는 병역세를 신설해 예산을 확보해야 함(권희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병역정책연구진, 국방연구원주최 『국방정책토론회』, 1993.5.22).

- 특례보충역 편입대상 산업체를 전자·기계 등 10개 업종에서 23개 제조업 전분야로 확대하고,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기술·기능자격증 요건도 크게 낮추어 대졸자의 경우 기사 1급 이상이던 것을 기사 2급까지, 고졸자의 경우 기능사 1급 이상이던 것을 기능사 2급 소지자까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생계유지곤란자의 경우 시·구·읍·면장이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던 것을 개선하는 등 개정에 관한 작업을 서둘러 빠르면 94년부터 실시할 방침임(병무청).

: 한겨레 93.5.12, 12면; 경향 93.5.22, 23면; 서울 93.5.23,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59면) 참조.

○ 북한관련법 개정의견

-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가 가동되면 투자보장, 산업재산권, 저작권보호, 왕래·접촉 등에 관한 세부합의서가 채택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법」, 「민법」, 「특허법」 등 관계법의 정비가 불가피함. 주요 개정사항은 ① 남북한거래 및 왕래에 따르는 민·형사관련 조항, ② 북한주민의 사례별 국적승인문제, ③ 일부 법률의 '북괴' 표현 등이 될 것임(한완상 부총리).

: 동아 93.4.30, 4면; 서울 93.4.30, 1면

○ 상훈법 개정의견

- 해방이후 정부의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행위를 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민족정기를 그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역대 정부가 포상을 실시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여 공적내용이 허위이거나 친일행각이 명백하게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서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이에 따라 현행법상 정부포상을 받

은 독립유공자의 서훈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국가보훈처).

: 서울 93.5.12, 22면

○ 순직예비군보상관련 입법의견

- 현재 예비군이 훈련시 사망할 경우 보상은 병역법 제65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3박 4일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보상문제를 현역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보상규정을 현역과 방위병은 그대로 두더라도 동원예비군이나 일반예비군 훈련기간동안 소집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차후 병역의무이행에 사회봉사개념이 도입될 경우 예비군훈련에 필연적으로 근로봉사의 개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보상도 일반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정부).

: 경향 93.6.14, 1면; 조선 93.6.14, 30면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개정의견

- 귀순자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실시해온 현행 법제도가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시행에 문제가 많아 보상을 크게 낮추는 선에서 개정키로 함(민자당).

: 경향 93.4.27, 2면, 세계 93.4.27, 2면; 서울 93.4.27, 2면

◎ 內務・地方行政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행정전산망의 추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기록항목 등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사전에 국민에게 공시하고,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③ 개인정보는 법령상 보유목적 외에는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④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청구권 및 불복청구권을 인정하고, ⑤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유출·누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

: 한국 93.6.14, 2면

○ 민원처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처리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총리실과 총무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7월말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임(민자당).

: 서울 93.6.3, 22면

○ 소방본부·민방위통합관련 입법의견

- '작은정부구현'방침에 따라 시·도소방본부를 시·도 민방위국과 통합하여 민방위소방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방위·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 또는 서기관으로 복수직화한다는 방침하에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임(내무부).

: 서울 93.6.12, 22면

○ 신원증명서제도관련 입법의견

- 입사서류등에 반드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신원증명서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다만, ①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수형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④ 현역 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정부).

: 세계 93.6.14, 1면

◎ 社會·文化·教育

○ 가내근로법(가칭) 제정의견

- 주부노동력을 주로 활용하는 도급제 수공업형태의 가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내근로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임(정부).

: 동아 93.6.9, 30면; 한국 93.6.9, 2면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가정의례업소는 허가제에 묶여 신규업소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요금도 지난 12년동안 고시제로 묶여 현실화되지 않아 부대물품 강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① 예식장의 경우 현행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유업화해 공공건물이나 종교시설 등에서도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장의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가정의례업소의 요금도 현행 고시제에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며, ③ 청첩장발송금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함(보사부).
-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시설, 야외, 고수부지,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만 지불하고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의업을 자유업으로 바꿔 누구나 장의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영안실의 경우 장의예식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병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와 함께 결혼 2개, 장례 10개로 제한되어 있는 화환과 조화의 숫자는 계속 줄여나가고 허례허식을 일소하기 위하여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에서의 결혼식은 계속 규제할 것이나 일반화되어 있는 결혼청첩장 발송은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보사부, 『가정의례 개선에 관한 공청회』, 1993.6.4).

: 세계 93.5.12, 22면; 조선 93.6.5, 22면; 동아 93.6.5, 30면; 국민 93.6.7,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47~48면), 제6호(71면) 참조.

○ 고용보험법(가칭) 제정의견

-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제'를 예정대로 '95년부터 시행하고 '96년부터 통상임금의 45~50%를 실직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안」을 상정키로 함. 이 안에 따르면 실직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험금지급기간은 최장 1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0만개소(5백여만명)로 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가족봉사자, 일용·계절·시간제근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며 고용보험의 비용은 사용자측이 실업보험금의 50% 및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 비용을, 근로자측은 실업보험금의 50%를,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각각 부담토록 함(정부).

: 동아 93.6.9, 30면; 한국 93.6.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 참조.

○ 교육법 개정의견

교육제도개선

- 현행 선발고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극소수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비교육적이고 불합리한 형태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95년부터 내신성적만으로 고교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교신입생 선발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교육부).
- 현행 6-3-3-4학제를 유치원 교육과 국민학교 교육을 묶어 6년제로 하고 중·고교교육기간도 현행의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통합·단축하는 등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학입시 및 정원의 완전자율화,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대개혁안'을 6월말까지 확정하고 현재 지역별로 평준화 또는 경쟁입시로 분리 실시되고 있는 현행 고교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교육체제도 학교교육과 산업체교육으로 이원화해 기술계취업자의 고등교육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함. 교육

대개혁 작업을 대학입시·정원 등 제도개혁과 교과서 개편·전인교육 실시 등 교육내용 개혁의 2가지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기로 하고 감독·통제 등 일선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독점적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교육의 자율화·다원화를 꾀하기로 함(교육부).

- 국민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무상이나 6대도시의 국민학교아동에게는 육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재정부담능력을 확충, 교재비를 비롯한 각종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학생의 전인교육과 학습의 효율성 차원에서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강인수 수원대교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주최 『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현실』, 1993.5.5).

: 국민 93.5.4, 12면; 서울 93.5.5, 16면; 서울 93.6.8, 3면; 한겨레 93.6.8, 14면; 경향 93.6.10, 2면

부정입시방지제도

- 대학입시와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해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를 2가지 유형으로 제작, ② 출제위원 및 관리위원의 외출 전면금지, ③ 이들이 필요한 물품의 일괄구입, ④ 출제본부에 설치하던 전화도 없애고 모든 연락은 문서로 전달, ⑤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원안도 밀폐된 가방에 넣어 밖에서 대기중인 경찰관과 별도의 직원이 인쇄소로 운반, ⑥ 동일고교 수험생이 전후좌우 및 대각선방향으로 앉지 못하도록 좌석배치, ⑦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2년간 응시기회의 제한 등을 내용을 주요골자로 「교육법」을 개정기로 함(국립교육평가원).

: 동아 93.5.11, 31면; 한국 93.5.11, 31면; 서울 93.5.11, 22면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

- 외교관 및 장기해외주재원자녀 등의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관련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이에 근거한 각 대학의 학칙규정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번 교육부의 입시부정명단 공개에서 입학에 법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무리한 해석으로 인해 부정입학자로 공개되었다는 반발이 있는 등 잇단 시비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

라, 이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 93.5.11, 17면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8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전문기술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정규사원 채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며 기혼여성 등 유효인력의 흡수 등을 위하여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용역알선업을 제도화한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내년 부터 시행키로 함(노동부).

- 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를 정당화해주고 정식직원대신 파견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며 특히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우려가 큰데다, 기존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2명이 됨으로써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음(노동계).

: 한국 93.5.2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5~76면) 참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내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성차별 분쟁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산전·산후휴가 등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특히 기혼여성 재고용제와 시간제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재택근로제·간호휴가제 등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개발할 방침임(정부).

: 동아 93.6.9, 30면; 한국 93.6.9, 2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하되 식비, 가족수당 등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임금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퇴직금산정시 71년 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근로연수에 포

합시키지 않아도 되며 사원들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제도는 당해년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나, 각종 수당 등의 통상임금포함 여부, 월평균근로시간 산정방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임(노동부).

- 그동안 무노동무임금원칙 때문에 파업이 끝나도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았고 생계에도 고통을 받아야 했으므로 선진국에 서처럼 노조에서 '파업기금'을 마련하라는 말이 있으나 재정여건상 어려워므로 생활보장적 부분을 확대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책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을 것이고, 당초 무노동무임금은 파업자체의 억제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노동자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임(원정연 노총 정책연구실부실장).
- 무노동부분임금제 도입은 이미 노동정책의 기초로 확립된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적용에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사분쟁을 조장하거나 장기화시킬 것임(황정현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조선 93.5.21, 2면·11면; 조선 93.5.22, 6면; 세계 93.5.27, 21면; 한겨레 93.5.28, 2면; 서울 93.5.28, 5면; 국민 93.5.28, 2면; 한겨레 93.5.30, 14면; 경향 93.5.31, 17면; 국민 93.5.31, 17면

시간제 근로자

- '92년에 행정지침을 통해 주당 44시간의 70%에 해당하는 30시간 이하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규정하여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왔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제근로자들이 퇴직금, 휴가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함. 주당 근무시간이 37~4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휴가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상시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시간제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마련키로 함(노동부).

-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2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이고 취업제한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높이며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내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키로함(노동부).

: 동아 93.5.11, 29면; 한국 93.5.22, 23면; 한겨레 93.5.22, 14면;
세계 93.5.22, 22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의 수사권

- 현재 노사 양측에 대해 갖고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의 수사권중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찰과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만을 갖도록 할 방침임(노동부).

기 타

- 노조의 정치활동은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노동관계법 이외에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조항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어 급속히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제3자의 노조개입금지조항 등 이미 사문화된 조항은 새로운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임(이인제 노동부장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주최 『노동정책토론회』, 1993.5.4).
- 근로자가 해고된 뒤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해고효력과 관련한 다툼이 진행중일 경우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근로자 및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치 않던 기존방침을 수정하여 대법원판결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근로자·조합원신분을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노동부)
- 휴일, 시간외 근로가 중복될 경우 현행 2백 50%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3백%의 임금을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노동부).
-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급여지급을 없애고 파업때 조합원 생계비를 노조기금에서 마련토록 하는 등 조합살림을 조합 스스로 꾸려 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현재 조합원 임금의 2%로 되어 있는 노조조합비 상한선을 폐지하여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임(노동부).

- : 서울 93.5.5, 1면; 경향 93.5.10, 22면; 한겨레 93.5.16, 14면; 조선 93.5.21, 2면; 세계 93.5.26, 22면; 조선 93.5.24, 1면·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제2호(45면), 제5호(50면), 제6호(76~77면), 제7호(61면) 참조.

○ 노인복지법 개정의견

-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현재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인력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유료민간보호시설의 확충에 민간기업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할 것임. 현행법규는 민간기업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 자체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확실적인 대책보다는 영세노인과 경제력있는 노인을 구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이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중앙일보사설).
 -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0.2%에 머물고 있는 노인유료시설을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개인에게까지 실버산업 참여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함(보사부).
- : 중앙 93.4.26, 3면; 세계 93.5.7, 11면

○ 도시공원법 개정의견

- 현행법상 도시공원내에 사유지를 가진 자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또는 독서실이나 청소년회관을 조성하여 소유·운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뒤 무상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여 공원개발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키로 함(건설부·민자당).
- : 한겨레 93.4.29, 6면; 서울 93.4.29, 9면

○ 문화관계법 개정의견

- 현행 문화체육관련법 중 불합리하거나 규제위주의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지방문화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독립기념관법」, 「국민

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을 제·개정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들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함(정부·민자당). 「저작권법」은 복사기기에 대한 복제 보상금제도 및 대여권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20년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접권(소설 등의 각색이나 드라마화 등에 적용) 보호기간은 연장할 방침임. 한편 검인정교과서에서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토록 할 방침임. 「영화법」 및 「공연법」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사전검열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외국간행물수입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상위기본법으로 삼기로 함. 이 밖에 제정된지 28년이 지나 법적 실효성이 미약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폐지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며,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의 주지취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교활동의 자율성제고와 전통사찰재산의 보호를 위해 행정간섭과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정부·민자당).

: 국민 93.4.24, 2면; 한국 93.4.25, 2면; 경향 93.4.25, 2면; 서울 93.4.25, 1면; 세계 93.4.30, 17면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개발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당수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① 발굴전문용역회사의 발족, ②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③ 매장문화재보존특별지구의 지정, ④ 매장문화재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의 신설, ⑤ 토지형질변경에 앞선 매장문화재 조사의 의무화 등을 규정해 공사에 들어가기전 철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이선복 서울대교수, 경실련주최 공청회 『매장문화재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993.6.11).

: 세계 93.6.11, 17면

○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의견

- 그간 탈법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슬롯머신업을 전면 폐지키로 하고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해 3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기존 3백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허가를 해주지 않고 신규허가를 일체불허하기로 하고 현행법의 슬롯머신업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 하되 현재 영업중인 업소의 기득권문제 때문에 시행은 3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함(정부).

- 이같은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그 수요가 카지노로 몰리는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건전한 오락으로 유도하는 적절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조선 93.6.3, 1면; 동아 93.6.3, 1·30면; 국민 93.6.2, 1면

○ 산업기술교육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별 근로자를 입학대상으로 하는 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여 산업체가 학교법인 형태로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9월정기국회에서 「교육법」을 개정하고 「산업기술교육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입법조치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설립인가를 내줄 방침임(정부·민자당).

: 서울 93.5.4, 2면

○ 아동복지관계법 개정의견

아동복지법

- 아동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관계법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될 경우 이웃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는 한편, 아동과 관계있는 의사·교사·아동복지요원에게 특별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생활보호법」상의 아동보호규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아동복지법」에 흡수하고 이 법을 아동복지법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개정해야 함(박균성 단국대교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 주최 『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현실』, 1993.5.5).

: 국민 93.5.4, 12면; 서울 93.5.5, 16면

영유아보육법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보육시

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5개년계획기간 중 대상사업장을 3백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함(보사부).

: 동아 93.6.13, 4면

학교보건법 등

- 공중시설의 경우 현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일정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간접흡연으로 아동 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모두 비흡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아동보호차원에서 5백m로 연장해야 하며 이 구역내에는 비교육적인 포스터 등의 선전물을 일절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함(이근 이화여대교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주최 『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현실』, 1993.5.5).

: 국민 93.5.4, 12면; 서울 93.5.5, 16면

○ 영화산업관련 입법의견

- 외국영화에 대한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법으로 정한 스크린쿼터제(연간 1백45일)는 우리 영화의 제작편수가 줄고 있는 등 상황변화로 이미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우리 영화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대극장은 「공연법」, 소극장(3백석 미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극장관련 법규도 「공연법」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임(극장협회).
- 현재 우리 영화계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만큼 현단계에서 스크린쿼터는 고수되어야 하고 하루빨리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영화산업의 구조개편, 전문인력 양성, 영화진흥금고의 설치 등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영화인협회).
- 신경제 5개년계획을 마련하면서 현행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영화산업을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함(문화체육부).

: 국민 93.5.28, 10면; 조선 93.6.3, 2면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안

- ① 외국간행물 수입업을 전면 개방하여 등록제로 하되 미성년자 등 등록자격제한자의 범위 및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② 국헌 및 공안문란 간행물을 '특정외국간행물'로 분류해 그 범위를 열거하며, ③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현행 징역 1~2년을 3년 이하로, 벌금은 수입원가의 3배 이내로 부과하던 것을 5배 이내로 각각 늘렸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문화체육부).

: 서울 93.5.28, 21면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한·일간 현안문제의 하나인 정신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제시대 정신대 여성들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률안(가칭)」을 마련함(보사부).

: 서울 93.4.30, 5면

○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촉진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촉진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보사부).

: 동아 93.6.13, 4면; 국민 93.6.12, 18면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재 등록된 5천9백 99종의 정기간행물 중 미발행·발행중단·발행요건미비 등의 하자가 있는 간행물이 36%나 되고 발행·편집인이 강간 등 파렴치범인 경우도 많아 이들로 인한 폐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종전처럼 정권이 바뀔 뒤 독소조항을 지닌 악법이라는 평가를 듣는 일이 없도록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해안으로 법 개정을 할 방침임(공보처).

: 경향 93.4.27, 2면; 조선 93.4.27, 2면; 동아 93.4.27, 3면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개정의견

- ① 현행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할 것, ②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찬조금품을 학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만 교육청에 보고토록 관리규정을 개선해 줄 것, ③ 교육과 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대표성을 명문화하고 교육청소속 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 포함)의 지방직화를 조기실행할 것, ④ 국가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권과 임용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것 등을 건의함(전국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와 자율성 신장을 위한 협의회』, 1993.5.26).
-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실을 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함. 현재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에 중복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부 감사권한을 시·도교육위로 일원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시·도교육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함과 아울러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 교사·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바꿔 지방교육행정을 지방공무원이 수행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또한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하고 중고교생의 진로교육도 강화시키기로 함(민자당).
-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전인교육을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시·도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실현하는 한편, 교육예산 심의권, 특별부과금 부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등 교육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함(전국 시·도교육위원, 『제4차 전국 시·도교육위원대회』, 1993.6.11)
-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의결권을 독점할 경우 시·도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지자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장에게 교육재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교육비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서울시교육청).

- 교육위원들이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권한만 늘리려는 집단이기주의로 흐르는 형태는 자제되어야 할 것임(학부모).

: 한국 93.5.27, 21면; 한겨레 93.6.12, 14면; 조선 93.6.12, 22면;
국민 93.6.12, 18면; 한국 93.6.15, 2면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불법·음란출판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구속, 출판물의 압수, 판매이익의 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등록이 취소된 업소의 재등록을 막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함(정부).

: 서울 93.5.1, 22면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견

- 초·중등특수학교와는 별도로 내년에 장애아를 위한 공·사립 특수교육유치원 50~1백개소의 설치를 유도하여 전국에 6만명으로 추산되는 3~5세 장애아들을 조기에 교육·교정시켜 사회에 적응토록 할 방침임(교육부).

: 국민 93.6.8, 19면

○ 학교보건기능강화관련 입법의견

-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교보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교 과목에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하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어 1·2급의 정교사로 인정하며 양호실을 보건실로 개편하여 학교보건을 위한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 개정안을 상정키로 함(정부·민자당).

: 한국 93.6.7, 2면

○ 학원관계법 개정의견

- 교습과목에 맞추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지식과 기술교육에 비효율적이었던 규제위주의 현행 학원관계법을 자율경쟁위주로 대폭 개정키로 하고, 법령 또는 규칙상 입시, 검정고시, 어

학, 기계, 금속학원 등으로 분류된 교습과정과 이에 따른 시설기준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지역특성과 교습내용에 알맞게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학원설립을 신청할 때 대체사용이 가능한 서류까지도 중복제출케 했던 관행도 시정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하나만 제출하게 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함. 또한 속셈학원 등 소규모학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목의 교습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임(교육부).

- 소규모학원의 과외교습허용은 결과적으로 과열과외교습 열풍을 몰고 올 것이며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국교생일 때부터 남보다 앞서가도록 하기 위해 과목별 과외에 열중할 것이어서,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더욱 불신을 받고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임. 오는 9월부터 고 1·2학년에 대한 자율보충학습이 폐지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소규모학원 등에서 과외교습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임. 현재도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하려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한다면 난색을 표해 특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학부모들의 과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일선 학교 교장·교감).
-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유아교육이 과목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함(유치원·유아교육단체)
-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학원에서의 과외교습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양성화와 함께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동안 탈법·고액으로 일부계층만 혜택을 받던 과외교습을 일반 서민층에도 기회를 고르게 주는 셈이 될 것임(일선국교 교사).
- 이번 양성화조치가 확정된다면 소규모학원에서 좋은 강사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인원을 상대로 교습비를 비밀리에 많이 받고 강의하는 '불법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며 전반적인 재수생 감소추세와 함께 운영난에 허덕이는 입시단과학원이 속출할 것임(이창섭 중앙학원상담실장).
- 초·중학생의 학원과외가 결코 학습보충이나 소질의 조기개발과는 거

리가 먼 입시위주의 점수따기 공부에 그치는 것이고 학원과외를 일반화 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사교육비 총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2세 교육 자체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으며,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전면 개방하겠다는 식의 행정포기는 곤란하고 교육문제의 개혁과 개선은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므로 교육개혁계획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한국일보 사설).

: 세계 93.5.31, 22면; 한겨레 93.6.5, 12면; 동아 93.6.6, 23면; 한국 93.6.6, 3·18면; 경향 93.6.7, 22면; 조선 93.6.10, 5면; 한겨레 93.6.12, 12면; 세계 93.6.6, 22면

◎ 産業・經濟

○ 관세법 개정의견

- 저가의 농산물 및 경공업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농가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내년중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오는 '95년부터 쌀, 보리, 쇠고기, 과일류 등 농산물과 섬유, 신발류 등 1천개 내외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재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꿀 방침임(재무부).

: 조선 93.6.13,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4면), 제4호(33~34면), 제6호(79면), 제7호(64면) 참조.

○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하는 자가 귀국하면서 이사물품중 일부는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고 나머지 물품은 별도로 선박편 등으로 보냈을 경우 현재는 휴대물품 통관내역서를 제출해야만 별도로 보낸 이사화물을 통관시켜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끼리 이를 확인하여 통관시키기로 하고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해 서류없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건당 4천 5백원씩 받는 타 소장치허가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하순부터 시행키로 함(재무부).

: 경향 93.6.12, 7면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하경제를 불식시키고 사금융 자금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주택채권·지하철채권·전신전화채권 등 금융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금융상품을 실명거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면적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고, 이 법 실시 이전에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경과기간 3개월후에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비실명거래액원본의 10%를 과징금으로 징수함과 아울러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국고에 환수조치토록 하는 한편 비실명거래자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야 함(민주당).

: 국민 93.5.1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0면)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에 관한 입법의견

- 정부와 민자당은 법정고용의무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는데, ① 한사람이 2가지 이상 안전관리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겸직 허용, ② 소지한 자격의 안전관리자를 각각 고용한 것으로 인정, ③ 종업원 3백명 미만인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 면제, ④ 보건관리자(간호사)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을 허용 또는 인근병원 등에 위탁고용 가능, ⑤ 모든 제조업체의 조리사 고용의무 면제, ⑥ 환경관리인의 경우 공단이나 협동화단지 등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업체가 집단화되어 있을 때 공동선임의 가능 등을 주요골자로 함. 각종 규제제도의 개선과 관계법령의 개정, 고충처리, 이해조정, 규제실태 직권조사 등을 전담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당초 대통령이 임명한 7인에서 상공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는 9인으로 조정하고 공장입지절대금지지역 고시를 비롯한 창업 및 공장설립관련규제완화와 가스압력용기 정기검사 축소 등 위험한 기계·기구·시설에 대한 검사완화방안은 당초안대로 확정함(정부·민자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중 개정안과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상정하려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산업안전관리부분의 내용

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기업의 부담만을 덜어주기 위한 단견이며 특히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4조 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GNP의 3%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보건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노동계·경제정의실천연합).

: 한국 93.4.28, 9면; 경향 93.4.28, 9면; 서울 93.4.28, 2면; 한국 93.5.13, 29면; 국민 93.5.13, 17면

○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담배사업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현재의 재무부장관에게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현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담배소매인지정·취소권한을 일반시의 시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도 재위임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임(재무부).

: 경향 93.5.18, 7면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등록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도 면제할 방침임(상공자원부).

: 조선 93.5.2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0면), 제6호(81면) 참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거대기업인 포항제철이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이라는 이유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포항제철이 대규모 집단지정에서 제외되는 근거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고 자산규모로만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현행 기준을 자산과 계열기업수의 복수기준으로 정해 규제대상기업군의 수를 늘릴 방침임(공정거래위원회).

: 조선 93.4.16, 11면; 동아 93.4.16, 11면; 세계 93.4.16, 7면; 서울

93.4. 16, 8면; 국민 93.4.16, 7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7~48면), 제2호(47면), 제3호(61~63면), 제5호(52면), 제7호(83면) 참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일부 피라미드판매사들이 회원교육 과정에서의 감금, 폭행은 물론 대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을 고소득보장을 미끼로 포섭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검찰관계자).

: 세계 93.6.4, 22면

○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재 외화획득용자산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금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업의 특별감가상각비를 무조건 손비로 인정해 주고, 상품이나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도 선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건이 인도된 후에만 법인세를 납부토록 하며,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른 데 따른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임(재무부).

: 국민 93.6.11, 7면; 세계 93.6.12, 6면

○ 부부간 상속·증여세에 관한 입법의견

- 개정 가족법이 전업주부가 가사노동, 자녀교육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할 만큼, 증여세 감면으로 부부가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강기원 변호사,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주최 『부부간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1993.5.11).
- 부부별산제하에서 증여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법의 형평상 어려움이 있으나, 1천 5백만원+(결혼연수×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공제한도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적어도 1천 5백만원+(결혼연수×6백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임(이양자 세무사,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주

최 『부부간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1993.5.11).

: 조선 93.6.3, 18면

○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의견

- 흑자도산 및 회생가능한 우량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해 '부도유예제'를 도입하고 신용질서 정착추세에 맞추어 「부정수표단속법」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민자당).
- 법제정 당시 발행대상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까지 당좌수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결국 부도를 낸 중소기업주를 모두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악법으로 전락되었으므로 이 법을 대신할 채무불이행죄를 제정하기 보다는 어음처럼 기존의 민법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경향 93.5.24, 2면; 국민 93.5.24, 2면; 동아 93.5.28, 2면; 한겨레 93.5.28, 2면; 서울 93.5.30, 7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개정의견

- 공단공급을 확대하고 공단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에 공단개발권을 부여하여 자체공장이나 하청업체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민간주도에 의한 공단개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50%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중임(상공자원부).

:동아 93.6.3, 10면

○ 상속세법 개정의견

-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현행 상속세체계를 바꿔 상속받는 사람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를 위해 '세대이전생략세'를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하여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민자당).

: 경향 93.4.27, 2면, 세계 93.4.27, 2면; 서울 93.4.27, 2면; 중앙 93.4.27,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64면), 제6호(83~84면) 참조.

○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조기시행을 위해 주택을 한채씩 소유한 사람들이 결혼한 후 1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하고, 취학이나 부양가족의 세금공제를 받으려 할 때 일시퇴거 증빙서류외에 동거가족상황표, 본래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본인과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임(재무부).

- 입주의무기한인 5년동안 거주하여 아파트분양권을 얻게 된 임대아파트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민자당).

: 국민 93.4.21, 6면; 조선 93.4.22, 10면; 한국 93.4.22, 8면; 세계 93.5.3,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 제6호(84면) 참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① 서울 등 수도권중심지에 신·증축되는 3백평 이상의 상업용건물에 대해 '수도권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은 수도권의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내의 민간상업용 시설로 하되 숙박, 위락, 집회시설 등도 포함시킬 것, ② 대학, 공장,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은 수도권내 입지를 계속 규제할 것, ③ 부담금은 건축허가시 부과하여 준공검사시 한번에 받도록 할 것, ④ 부담금산정방법은 부과대상지역의 상업지역 단위면적당 평균지가에서 전국상업지역 평균지를 뺀 뒤 평균용적률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지가차이를 계산하고 여기에 건축면적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임. 수도권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낙후지역의

- 균형개발사업에 활용할 방침임(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정비시책공청회, 1993.5.14).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기초자료로 삼은 산업구조 등이 달라지고 여건변화가 심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자체도 부실위기에 놓여 있어,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권역별개발 방향을 재취합·조정해서 국토개발계획을 보다 완벽하게 세워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도 가능케 될 것이나,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목표의 틀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목표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이인원 홍익대학교수).
 -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제한정비권역내의 공장입지를 오히려 풀어주는 정부정책은 수도권집중완화와 지방분권 유도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할 것임(장명수 전북대학교수).
 - 사회간접자본과 국토개발업무를 관장하는 정책부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간 정책조정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주재하는 ‘국토개발장관확대회의’를 상례화하고,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창안하는 프랑스의 총리직속의 DATAR(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처럼 특수 전담기구의 신설도 고려할 시기임(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 수도권비중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내부에서조차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규제위주의 시책보다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① 현재 5개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수도권지역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 ② 서울을 국제도시로 육성, ③ 개발이 낙후된 경기동북부지역의 공장설치규제를 대폭 완화, ④ 대형 고층빌딩에 대한 규제도 완화, ⑤ 필요시설의 신축은 허용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균형개발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⑥ 건축관련 인허가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되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는 관행을 모두 없앨 방침임(건설부).

: 경향 93.5.15, 7면; 세계 93.4.20, 8면; 동아 93.5.11, 10면

○ 수출입관련법 개정의견

- 60년대초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외화도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승인제의 필요성이 최근 수출보험공사설립 등 국내무역환경변화로 감소하여 그 절차의 번거로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음에 따라 우선 올해안에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2만~5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승인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밖에 장기적으로 수출입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개편하고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함(상공자원부).

- 경제외교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군·안기부·경찰 등 비경제분야 인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온 현행 재외공관 주재관제도를 변경하여 경제부처 파견관 수를 대폭 늘릴 수 있게 개편하고, 검역·형식승인관련 규정이 국제기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약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등 46개 수입관련 개별법들을 내년중에 개정기로 하며, 또한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2백 74개 전업종을 대상으로 개방에서 5개년계획('93~'97년)을 내달중 마련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원칙신고 예외허가'체제의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임(정부).

: 국민 93.5.14, 6면; 한국 93.6.1,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5면) 참조.

○ 외국인토지법 개정의견

-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실수요의 범위에서 필요한 토지에 국한하게 하여 제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법상의 공장 및 토지, 은행·보험업은 본사나 지점관련 건물과 토지에 국한하도록 하며 주택의 경우는 내국인의 택지초과소유한도인 2백평을 넘지 않도록 하고 투기의 가능성이 있는 중도전매를 금지토록 하며 주택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원가로 국가가 취득하는 사후관리방안도 강구키로 하며, 금융업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취득및외국인에관한법률」로 바꾸기로 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협의중에 있음(경제관련부처 실무협의, 1993.5.4).

-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국내 「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법인 국내 지점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실수요용토지 취득을 업종에 관계없이 전면허용키로 하고 토지취득 및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및 국내지점은 신고만으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할 것이나, 외국인 개인이나 교포 등의 토지취득은 현행과 같이 엄격한 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임(건설부).

: 조선 93.5.18, 11면; 국민 93.5.18, 6면; 경향 93.5.18, 7면

○ 은행법 개정의견

- 은행장의 자격기준, 은행장 추천위원의 선임기준 등을 규정한 은행감독원의 은행장선임지침은 “은행업 인가는 경영진의 인격과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한한다”는 은행법 제12조를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사실상 주주권을 무시하고 은행장선임절차 및 자격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 지침은 법절차상 상당한 무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 등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한겨레 연재).

: 한겨레 93.5.13, 6면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지금까지 우리사주는 퇴직시까지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종업원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주고 우리사주의 취득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행정규제완화의 후속조치로 6월중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부터 종업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식은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취득후 7년이 경과하면 자유처분을 허용하고 특히 결혼이나 주택구입 등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할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록 할 방침임.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시행령」 등을 6월중에 개정하여 7월부터 증권회사 임직원이라도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에 의해 주식 청약분을 취득·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키로 하고, 투자자문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증권관계분야 박사·교수·석사 등 5인 이상 채용 의무조건을 삭제하여 증권업계 장기종사전문인력의 활용기회를 넓혀주기로 함과 아울러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한 채권매매시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을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와 장외매매 거래간의 수익률 차이를 해소토록 할 방침임(재무부).

: 조선 93.6.11, 11면; 한겨레 93.6.11, 6면; 세계 93.6.11, 6면; 서울 93.6.11, 9면

○ 재벌그룹업종전문화관련 입법의견

-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업종 구분없이 대기업 집단의 상호지급조정 및 타회사출자총액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화하기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공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주력업종의 선정은 재벌그룹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는 부분에 한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조정토록할 방침이며 주력업종 수는 5개 미만으로 제한해 그룹 규모에 따라 2~4개로 차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임(정부).

: 세계 93.5.9, 7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의견

-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모든 국산기계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키로 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절차도 간소화하여 신기술기업 화용시설이나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세액공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투자계획서, 투자완료보고서 등은 폐지하고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며, 사업전환시설 투자세액공제시에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할 방침임
(재무부).

: 동아 93.4.29, 11면; 세계 93.4.29, 6면; 서울 93.5.14, 6면

○ 종합토지세관련 입법의견

- 현재 조세감면특혜를 받고 있는 각분야를 전면 재검토하여 조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세감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함(정부·민자당).
- 은행이자에 대한 세율이 20%로 원금의 2% 정도이므로 종합토지세 실효세율도 1%는 되어야 하며, 연내 법개정을 통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을 조정한 뒤 오는 '95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김태동 성균관대학교수).
-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계획의 실천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6년부터 토지과표를 1백% 공시지가로 한다는 사실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충하기 위하여 '96년과 '97년은 명목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함(민자당).

: 세계 93.6.6, 2면; 한겨레 93.6.3, 2면; 경향 93.6.3, 2면; 서울 93.6.3, 2면; 세계 93.6.3, 1면; 국민 93.6.3, 2면; 동아 93.6.10, 11면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범위를 자산이 4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6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임(재무부).

: 서울 93.5.14,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7면) 참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특수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단가와 시설이 릉살롱보다 고급인 고급요정을 일반유흥업소로 분류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고급요정을 중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재산세율을 그동안 1천분의 20과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백 50과 1천

분의 50의 고세율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키로 함(내무부).

: 동아 93.4.18, 21면; 서울 93.4.18, 3면; 한겨레 93.4.18, 2면

○ 지적재산권관련법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되기는 했으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남아 수시점검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된 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의 지적재산권보호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태도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되므로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기술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지속하고 음반·비디오 복제물의 유통근절 등 지적재산권보호조치를 추진키로 하며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작업도 추진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지적재산권에 대해 걱정했던 과중한 로열티지급으로 인한 경제부담과 선진국기술에의 종속도 어느 정도 사실로 나타나는 듯하나 우리의 기술개발과 학문진흥, 문화창달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개정법령은 국내 창작자 것도 함께 보호하는 것이므로 해적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소극적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작물을 침해하는 외국사용자에게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임(송상현 서울대교수).
- 지적재산권보호가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외국의 지적재산권자에 의한 우리 시장의 교란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특허법」 등의 보완을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통상과제가 되지 않도록 정책차원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것임(손찬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유럽과 일본 등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키는 '미국 특별우대식 한미통상협상 접근방법'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며 국내의 지적재산권관계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소'와 같은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임(정상조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 93.5.2, 7면; 세계 93.5.11,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4면), 제6호(87면) 참조.

○ 통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 한국은행의 외환수급통계, 관세청의 무역통계 등 시의성이 필요한 통계, ② 농림수산부의 농업기본통계, 노동부의 월별 노동통계 등 신뢰도가 높은 통계, ③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 산업은행의 재무분석 등 기초통계를 가공한 통계 등에 대하여 공표전 통계청과의 협의를 면제해 주기로 함(정부).

: 세계 93.6.12, 7면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장을 겸임토록 하고 은행감독원장의 제청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임기보장을 위해 재무부장관의 한은총재해임권을 삭제하는 등 중앙은행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야 함(민주당).

: 국민 93.5.19, 2면

◎ 農林·水産

○ 농지관계법에 관한 입법의견

- 「농지의소유및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업발전·농어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농지소유를 일부 허가하는 한편, 상속·이농 등에 의한 비농가소유의 농지를 농가에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농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농지기본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까지 법안을 확정 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농림수산부).

: 한겨레 93.6.6, 1면; 동아 93.6.8, 11면; 경향 93.6.8, 7면; 한국 93.6.8, 5·9면; 조선 93.6.9, 1면; 서울 93.6.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1면), 제3호(65~66면), 제6호(88면) 참조.

○ 산지법(가칭) 제정의견

- 그동안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해온 산림을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개편하여 산업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유도하고,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을 현행 2천평방m에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산지매입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지이용·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산지법」을 제정할 방침임(농림수산부).

: 동아 93.6.8, 11면; 한국 93.6.8, 5·9면; 경향 93.6.8, 7면

○ 양곡관리법 개정의견

- 쌀의 출하집중을 예방하고 추곡수매에 따른 정부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담보로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제도'를 실시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임(농림수산부).

: 서울 93.5.11,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8면) 참조.

○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관한 입법의견

- 지난 1988년 농·수·축협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중앙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었으나, 중앙회장 및 일선조합장의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주무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감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있어, 사실상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중앙회장은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의 수익증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농·수·축협이 생산자보다는 임직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됨.

: 서울 93.5.8, 5면

◎ 建 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의견

- 개발부담금제도를 강화하여 구분별한 토지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환수토록 하기 위해 ① 공장터나 잡종지 또는 학교터 등에 아파트나 상가 등 건축물을 지어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도 땅값상승분의 절반을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고, ② 6대도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현행 5백평 이상에서 2백평 이상의 사업으로, 기타 도시지역은 3백평 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5백평 이상으로 확대하며, ③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부담금 부과시점과 완료시점의 땅값 산정기준을 현재의 공시지가로 통일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개정키로 함(건설부).
- 정부의 과세강화는 재산증식수단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지나쳐 개발을 기피한다면 공급의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대로 그 부담을 감당하고 개발에 나설 경우에는 그 피해가 최종수요자에게 떠넘겨질 위험이 크므로 과세에 의한 투기억제에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크고 그에 따른 가격상승과 그 부담전가의 후유증도 투기에 못지 않은 절박한 위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유와 거래에서 투기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한겨레신문 사설, 1993.4.29)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함께, 서울 등 6대 도시는 2백평, 그외 도시지역은 3백평, 나머지 농촌지역에서는 5백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조합이나 도심지 재개발조합과 같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합에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아파트 등을 분양하고 해산되면 이를 징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건설부).

: 조선 93.4.27, 10면; 한겨레 93.4.27, 7면; 경향 93.4.27, 7면; 세계

93.4.27, 7면; 서울 93.4.27, 9면; 국민 93.4.27, 7면; 한겨레 93.4.29, 2면; 한국 93.6.12, 6면; 세계 93.6.12, 7면; 한겨레 93.6.12, 7면; 국민 93.6.11, 6면

○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안

-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회사채에 준하는 조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한국 93.5.26, 8면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의견

-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현행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취하던 것을 건설업면허 취소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특히 부실시공업체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공사완료 후에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진행중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정부).

: 세계 93.4.29, 2면

○ 건설업관계법 개정의견

-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부실의 책임을 엄중히 가려내기 위하여 ① 부실시공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면허취소, 형사처벌 등의 제재강화, ②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독권한을 감리자에게 일원화하여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의 확립과 이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공업체의 형사처벌, ③ 아파트의 경우 시장·군수 등 제3자가 감리자를 지정, ④ 건설사별로 위반사실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정부공사 수주 배격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 ⑤ 아파트 등 주요 건물에 대해 현행 3~5년인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 ⑥ 공사중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경우 관련건설회사의 면허취소와 대표자의 형사처벌, ⑦ 아파트단지마다 시공회사, 책임자, 설계 및 감리자 등을 기록한 기록탑을 설치하여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라도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완전 복구 또는 면허 취소, ⑧ 대형공사나 교량, 터널, 댐, 지하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의 도입, ⑨ 설계시 토질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의 시행, ⑩ 교량이나 지중구조물에 대한 정기적 구조안전진단의 실시 등을 골자로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함(건설부).

: 경향 93.4.16, 7면; 서울 93.4.16, 8면; 조선 93.5.26, 2면; 동아 93.5.27, 11면; 경향 93.5.27, 2면; 서울 93.5.27, 10면; 세계 93.5.27,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9면) 참조.

○ 개정건설업법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대형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산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도급순위를 매겨 건설공사를 맡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이 업계와 학회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개정이 된 까닭에 대한건설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쳐 사실상 이 법의 시행을 백지화한다는 방침아래 또다시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함(건설부).

- 최근 토목·건설분야별 도급한도액제도는 중소건설업체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2~3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건설부에 제출함(건설업협회).

: 세계 93.4.22, 7면; 세계 93.4.25, 7면; 서울 93.4.2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7~68면) 참조.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 ① 동일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 동별로 완공 즉시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 ② 현재 최고 20%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녹지지역내 주택밀집지역인 자연취락지구에 한해 6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완화, ③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구역 중 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준공업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공업지역·시설용지지구에서는 2층 이하에 연면적이 5백평방m(1백 51평 가량) 이하인 소규모 공장건물에 한해 신고로 대체하고 설계도서제출의무도 면제, ④ 모든 공장과 주택에 대해 지하층설치의무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하도록 완화, ⑤ 중심상업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면 전면 도로폭의 3배 이내(원칙은 1.5배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지정·고시만 하면 건물 높이를 도로폭의 3배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 ⑥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판매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소매점의 설치면적제한을 현행 5백평방m(1백 51평) 이내에서 1천평방m(3백 3평) 이내로 상향조정하며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사무소의 설치면적제한도 현행 3백평방m(90평)에서 5백평방m(1백 51평)로 확대, ⑦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시내버스차고 등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각종 차고설치가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허용여부를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⑧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총포판매소를 근린생활시설로 새로 분류해 대로변, 주거지역 등에도 설치가능케 함, ⑨ 자연녹지지역내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관광호텔의 디스코테크, 주점 등 부대위락시설의 설치의 허용, ⑩ 현재 상업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단란주점의 설치를 준주거지역에까지 확대 허용하는 한편, 5백m² 이하에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공장과 주택은 지하층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녹지지역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할 방침임(건설부).

: 한국 93.4.28, 9면; 세계 93.6.12, 7면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의 추가적인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 전국토의 4.4%에 불과한 대지·공장용지 등 토지의 비중을 앞으로 5년 동안 두배 정도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행 도시·취락

등 10개 용도지역을 도시·개발·준보전·보전 등 4개 지역으로 단순화하여 전국토의 30%나 되는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는 준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선보전 후개발위주의 현행 토지정책으로 토지공급이 크게 제약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용도변경절차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국토관리법상의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보전지역, 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단순화시키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와 산림지역 중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은 활용가능지역으로 분류키로 하며 준도시, 준보전지역은 금지되는 행위와 규모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한행위열거방식'을 도입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농지와 산지중 개발용도로 전환되는 33.6%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가격심사를 폐지하고 허가대상을 축소하는 등 토지취득은 쉽게 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매입한 뒤 2년 동안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하여 공시지가 또는 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가격중에서 낮은 값으로 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할 방침임(건설부).

- 농지를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으로 나누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것이고 이는 농업정책의 포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 지정단계에서 구획정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잘못하면 농지값이 상승되어 전국농토가 투기장화될 우려가 있음(농림수산부).

: 한국 93.4.21, 9면; 서울 93.4.21, 8면; 경향 93.5.29, 2면; 서울 93.5.29, 2면; 한국 93.6.1, 8면; 한국 93.6.2, 8면; 경향 93.6.8, 7면; 동아 93.6.8, 11면; 한국 93.6.8, 5·9면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개발제한지역의 불합리한 운용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를 조사, 문제된 지역의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린벨트민원을 해소하기 집단취락지역에 한해 실시하려던 그린벨트민원현장조사의 범위를 30호수준 이상의 모든 취락으로 확대키로 함 (정부·민자당)

: 조선 93.4.29, 1면; 한국 93.4.29, 2면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의견

- 부동산의 건전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이 시·도 조례에 위임해 9단계로 정해오던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을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중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업소들을 대형화시켜 중개정보를 공유하게 하며 부동산유통시장의 근대화를 위한 전속중개제도의 도입, 부동산정보망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키로 함(건설부·민자당).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자율화할 경우 수수료가 크게 높아져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한 후에 개정을 심의할 방침임(고병우 건설부장관).
- 권익단체가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임(공정거래위원회).

: 한국 93.4.29, 8면; 한겨레 93.4.29, 6면; 서울 93.4.29, 9면; 경향 93.5.7, 6면; 동아 93.5.7, 11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현재 수도권의 5개 권역 가운데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축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주변부인 개발유보권역·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단순화시키고 수도권문제의 핵심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은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성장관리권역의 공장과 주택입지는 크게 완화하는 한편,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집중형 단핵구조로 되어 있는 수도권 공간구조를 지역분산형 다핵구조로 개편하며, 수도권내 대학신설은 금지하되 '95년까지 연간 이공계증원을 2천명의 범위안에서 허용하고 전문대학의 신증설은

전국중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할 방침임(정부).

: 한겨레 93.6.3, 7면; 동아 93.6.8, 11면; 한국 93.6.8, 5·9면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의견

-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나 공사수주업체가 파산 또는 부도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직접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함과 동시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바뀐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에 대해 조정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며 예산부족 및 예산배정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면허·인허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정부발주공사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키로 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정부공사를 현행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함. 또한 공사에 예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교량·댐·공항·도로·철도·터널 등 모두 14종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적용키로 확정함(재무부·건설부).

: 동아 93.5.19, 10면; 세계 93.5.19, 7면; 국민 93.5.19, 7면; 조선 93.5.26, 2면; 동아 93.5.27, 11면; 경향 93.5.27, 2면; 서울 93.5.27, 10면; 세계 93.5.27, 2면; 국민 93.6.14, 7면

○ 주택임대전문제도관련 입법의견

- 주택임대시장 육성방침에 따라 주택임대전문업체도를 도입하여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할 경우 관할 시·도에 임대전문업자로 공식등록시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제와 금융혜택을 주고, 세입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올해안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임. 그러나 임대전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금을 증과하여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할 예정임(건설부).

: 조선 93.5.8, 7면; 한국 93.5.8, 7면; 한겨레 93.5.8, 7면; 서울 93.5.8, 8면

○ 지역균형발전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온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 그 내용과 취지가 비슷해 「지역균형발전법」으로 통일하여 제정기로 함.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특정지역을 '신산업자유지역'으로 선정하여 금융·세계상의 집중지원을 하고 신산업자유지역에 새로 공장을 세울 경우 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 주며 신규설비투자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금액의 2배를 공제해 주기로 함. 또한 이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모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로 인정해 주기로 하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계획도 신산업자유지역 위주로 수립하여 추진하며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 지역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정착금도 지원해 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정부·민자당).

: 서울 93.5.30, 6면; 한국 93.6.8, 1면; 경향 93.6.8, 7면; 동아 93.6.8, 11면; 한국 93.6.8, 5·9면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비영리법인의 사택택지면적을 제한하고 교회 기타 종교시설을 신·증축하기 위해 택지를 매입하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고율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임(정부).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비영리법인의 사택택지면적의 제한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① 전임교역자와 직원을 위한 사택취득이 가능토록 할 것, ② 필요한 규모의 택지구입기간과 건축에 소요되는 실제기간을 고려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까지 연장해 줄 것, ③ 교회가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택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 매입허가를 받은 뒤 그 규모에 달하기까지는 신고만으로 취

득이 가능토록 할 것, ④ 종교단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종교시설건축을 위해 소유한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 입법예고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교회내 목사관 제한조건 철폐, 교회외부 목사관 인정 등 협의회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토지구입후 일정기간내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증과세하는 등 여전히 교회에 불리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회재단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조세법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건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야 할 것임(한국교회문제대책협의회, 1993. 5.27).

: 국민 93.5.24, 21면; 국민 93.5.31,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5면), 제6호(90~91면) 참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택지소유상한제가 취득허가기준 및 부담금부과제외택지의 범위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독지가들이 학교법인 등에 땅을 기증함에 있어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업자·학교법인 등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제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3.4.30, 5면

○ 토지관련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5개분야 93개에 이르는 토지관계법률을 '95년까지 16개로 통폐합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여 토지관계법 체계를 「토지관련기본법(가칭)」 중심으로 정비하고, 지역개발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공단·주거·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오는 '95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의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토지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임.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당초의 취지대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식품, 잡화, 의약품 등 일

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실, 목욕탕, 양어장, 축사 등의 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금대신 토지를 납부하는 '물납제도'도 오는 '96년 도입키로 하며,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기존의 '개발부담금'과 신설되는 '수도권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집중 투자키로 함(정부).

: 동아 93.6.8, 1면·11면; 경향 93.6.8, 7면; 서울 93.6.8, 9면; 한국 93.6.8, 5·9면; 서울 93.6.11, 2면; 서울 93.6.12, 3면; 한국 93.6.12,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1면) 참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의견

-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 1억원 이상인 부채지주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기준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채권으로 보상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부채지주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채권으로 지급할 방침임(건설부).

: 한국 93.4.19, 2면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형사입건 면제범위를 현재 20만원에서 1백만원선으로 대폭 확대하고 형사입건 면제범위의 구체적인 금액은 검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한편, 정신병이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임(행정쇄신위원회).

: 세계 93.5.15, 2면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지적재산권보호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

난해 12월 제정· 공포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집적회로에 대한 배치, 설계권자의 권리보호 범위를 배치설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조된 최종제품으로 까지 확대토록 하고 등록일로부터 10년의 배치설계권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상공자원부).

: 경향 93.5.18, 7면; 서울 93.5.19, 8면; 한겨레 93.5.19, 8면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앞으로 선정될 방사성폐기물관리부지 주변의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기간중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입법화할 방침임(과학기술처).

: 서울 93.6.11, 16면; 세계 93.6.10, 21면

○ 원자력안전규제관련 입법의견

- 국내원자력 이용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안전개념 및 안전성평가방법 등이 변화해 새로운 규제수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점에 있어, 무분별한 외국제도의 도입을 지양하고 우리 문화와 정치·사회적 배경 등을 감안한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독립적 규제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국가행정의 전문화·지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원자력 안전확보에 대한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원자력사업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장재욱 과학기술처 원자력안전과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주최, 『원자력안전문화확립을 위한 제3회 원자력안전성심포지엄』, 1993.4.16).

: 국민 93.4.19, 10면; 세계 93.4.23, 9면

○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정의견

-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의 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관하되 요금결정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요금수준의 불균형 등을 막기 위하여 기본요금 결정절차 및 조정기준, 동일노선에 대한 동일요금 수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임(정부·민자당).

- 현재 전국이 단일체제로 되어 있는 택시요금을 시·도별 특성에 맞게 차등화하기 위하여 요금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기존 택시업체의 증차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의 신규면허를 확대키로 하며, 민원인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 할 때 거주지 일선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동일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청이면 어디에서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때 차고지확보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다인승차량 우선통행제나 도심통행료제 도입,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누진과세 등을 추진키로 함(교통부).

: 경향 93.5.17, 2면; 동아 93.6.4, 29면; 서울 93.6.4, 21면

○ 정부출연연구소제도관련 입법의견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연구관리에 도입해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요지향적인 연구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으나 연구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는 국립연구기관과 가까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① 기업과 연구계약을 많이 맺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그만큼 정부지원이 줄어들도록 예산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산학협동을 많이 할수록 다음해 연구소운영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생겼고, ② 정부가 예산지원을 빌미로 인사권, 예산권, 연구관리권에 깊숙이 개입해 연구생산성을 저하시켰으며, ③ 법적 성격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제도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연구원의 노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④ 연구기관에 협상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 노사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73년 제정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대폭 개정하여 ① 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의 명시, ② 기업가의 계약연구사업수입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 보장, ③ 연구원 연금제도의 도입, ④ 연구수입을 자체기

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손익보증기금제도의 허용, ⑤ 노조문제의 제도적 해결 등이 법조항에 포함되어야 함(강박광 한국과학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주최 『과학기술정책간담회』, 1993.4. 16).

- 주어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출연연구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을 실현시키는 데 적극 노력할 방침임(손연수 과학기술처연구개발조정실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주최 『과학기술정책간담회』, 1993.4. 16).

: 한겨레 93.4.20, 8면

◎ 環境・保健

○ 공중위생법 개정안

- 오는 7월부터 세탁소를 신고없이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이·미용과 관련된 학과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미용업소 등이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목욕탕·여관 등 위생접객업소가 허가·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방청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등 물처리약품 제조업의 허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며 위생용품의 품목별 제조 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없애기로 함(보사부).

: 한겨레 93.5.28,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5면) 참조.

○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농지보전지역과 환경보전지역을 축소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촉진하여 환경파괴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환경정책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는 커녕 행정규제완화를 구실로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정부는 성장일변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르는 환경파괴에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들 법의 개정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할 것임(김병오 민주당 정책위의장).

: 동아 93.6.5, 4면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관련 입법의견

-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맑은 수돗물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경제활성화를 구실로 한 환경파괴행위인데, 이같은 '환경악법'이 제정되는데도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비밀에 부친데다가 환경처가 반대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행정이 실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환경단체).
 -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활동의 지원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호지역 등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이 환경파괴만 가속화 시키는 것임(신창현 환경정책연구소).
 -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에서 공장입지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식수원보호에 큰 뜻이 있는 것인 만큼 국회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전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손질을 거쳐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임(서울신문사설).
 - 이 법은 공장마다 두드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인 법정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공단별로 3~4명의 공동관리인을 두도록 허용하여 환경관리체계를 더욱 허술하게 만들었으므로, 삶의 질을 도외시한 성장위주의 신경제5개년계획을 전면수정하고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며 신경제 5개년계획에 상응하는 신환경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민간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환경운동연합).
- : 동아 93.5.16, 23면; 서울 93.5.18, 3면; 국민 93.6.5, 18면; 한겨레 93.6.5, 14면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담배가 지방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 외에 건강에 해로운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담배수익금으로 암퇴치사업과 환경보호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함(정부).
- : 서울 93.6.2, 9면; 국민 93.6.1, 19면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전국의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4평인 묘지의 상한선을 3~6평으로 줄이고 무연고묘지를 모두 개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토록 할 계획임(보사부).

: 한국 93.5.20,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6면) 참조.

○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의견

- 장기이식수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과시체해부보존에관한법률」로 개정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기이식수술실태조사를 실시기로 함(보사부).

: 동아 93.5.18, 30면; 서울 93.5.18, 2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3면), 제6호(97면) 참조.

○ 개정약사법시행규칙관련 입법의견

-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허용한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은 서양의학 일변도의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되어 한의학을 존폐위기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오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독립적인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보사부내에 한의학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함(한외과대학교수협의회 『민족의학수호를 위한 교수결의대회』, 1993.5. 20).
- 한의사를 군의관 및 공중보건관에 임명하고 물리치료·전자침 등의 한방처방을 의료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사부내에 한방전담과를 신설하는 한편, 보사부 자문기관 성격의 한의학 발전위원회와 한의학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임(보사부).
- 최근 보사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발전방안은 한의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이며 의료일원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권과 의료기사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약사의 조제권도 의사의 처방 아래에서 시행되어야 함(대한의협).
- 약사와 한의사의 한약조제권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영역이 상호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임(보사부).

- 보사부가 최근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한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의료일원화의 정책방향과 소신을 접어둔채 약사법 개정방침을 밝히는 등 무소신 무정책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하한 경우에도 약사의 조제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서울시 약사회 성명).
-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 사태는 전적으로 보사부의 편파적이고 원칙없는 보건의료행정 때문이며 부당하게 삭제된 약국내 한약장 설치 금지조항을 즉시 복원시켜야 할 것임(한의사협회 성명).
- 지난달말 보사부가 내놓은 '한의학발전방안'이라는 것도 진실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약사들의 한약조제금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책임있는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11개 대학 한의대 상임위, 1993.6.12).

: 서울 93.5.21, 21면; 국민 93.5. 21, 19면; 한국 93.5.22, 22면; 조선 93.5.25, 30면; 동아 93.5.25, 25면; 한국 93.5.26, 31면; 서울 93.5.22, 23면; 한겨레 93.5.24, 14면; 동아 93.6.1, 29면; 조선 93.6.1, 31면; 한겨레 93.6.1, 14면; 세계 93.6.1, 22면; 국민 93.6.1, 17면; 동아 93.6.8, 31면; 서울 93.6.8, 23면; 조선 93.6.8, 31면; 조선 93.6.9, 2면; 동아 93.6.9, 30면; 한겨레 93.6.13,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8면) 참조.

○ 에이즈예방법시행령 개정의견

- 외항선원들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진이 선원들의 사기저하 및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에이즈예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의무검진조항을 6월말까지 삭제키로 함. 그러나 외항선원들은 「선원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건강진단시 에이즈항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입국선원은 72시간내에 에이즈자율검진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하고 미검진자에 대해서는 승선을 불허할 방침임(보사부).

: 세계 93.6.9, 21면

○ 지하수법(가칭) 제정의견

- 현재 지하수가 무질서하게 개발·이용되어 자원이 고갈되고 지반 침하나 오염사고 등의 사태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내년부터 목욕탕이나

공장 등에서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도에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채취를 금지하고 오염 등을 막기 위하여 지하수보호구역을 설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하수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조문 정리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건설부).

: 동아 93.5.18, 11면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의견

-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호응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키로 함. 이를 위해 앞으로 개정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각종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각종 국제협력에 적극 대처한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킴과 아울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개념의 도입, 환경을 이용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지불원칙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임(민자당).

: 서울 93.6.10, 22면; 조선 93.6.10, 2면;

◎ 法院·法務

○ 마약관련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지금까지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몰수가 가능했던 마약거래재산에 대하여 검찰의 입증에 있을 경우 형확정 이전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거래로 얻은 이득을 감추기 위한 돈세탁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불법자금의 입금시 금융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마약관련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함(법무부).

: 한겨레 93.6.11, 2면

○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의견

- 슬롯머신업계의 검은 부 축적은 업소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국한되어 있고 지도·감독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투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시설 및 운영상태에 대한 정기감독 등의 규정은 전혀 없어 일선경찰서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단속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폐해는 현행 「사행행위 규제법」 상의 미비점 때문에 가능했으므로 차제에 투전기업소에 대한 단속권도 일반무도유형업소처럼 일선서로 대폭 이양되어야 함.

-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의 사회적 폐해를 극소화 하기 위해 ① 슬롯머신업소의 내국인상대영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 관광진흥차원에서 관광단지 등 특정지역과 특급호텔에 한해 허가를 해 줄 방침이며, ③ 허가권은 교통부, 단속권은 경찰로 나누어 허가·단속업무의 일원화로 인한 비리·유착을 막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임(경찰청).

: 국민 93.5.7, 18면; 한국 93.5.13, 31면

○ 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현행 법체계에서는 성폭력관련 법규정이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고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교화에 대한 대책과 특별처리절차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상습범을 양산하고 있어, 성범죄를 세분화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최영애 성폭력상담소장, 국회법사위주최 『성폭력대책관련입법에 관한 공청회』, 1993.5.11).
-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부터 바로 법적규제를 이끌어내는 입법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리의 법현실을 보더라도 법이 없거나 미약해서 성범죄가 통제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성범죄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이를 가중처벌하자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특별법의 형식을 빌려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등의 필요한 내용을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김영환 한림대학교수, 국회법사위주최 『성폭력대책관련입법에 관한 공청회』, 1993.5.11).
- 성폭력특별법은 대선과 총선 때 각 당이 법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 필요성이 이미 검증된 상태인데도 일부 법사위위원들과 토론자

들이 특별법제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성폭력의 법적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등 특별법제정운동을 펴온 여성계의 의견이 최대 반영된 성폭력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해야 할 것임(범여성계·사회단체 등 81개단체,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여성·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993.5.23).

: 중앙 93.5.11, 5면; 동아 93.5.12, 29면; 한겨레 93.5.12, 8면; 한겨레 93.5.23,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2~73면) 참조.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개정의견

- 현재 징발토지가 해제될 때 해제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환매권 및 현시가에 의한 수익계약 등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징발이 해제되어도 통지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징발토지를 과감히 해제하고 해제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징발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임(국방부).

- 국가가 토지를 징발했다가 원인이 소멸되거나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징발된 토지를 환매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향후 2년동안 환매구제기간을 설정하여 연고자가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민자당).

: 한국 93.5.10, 1면; 한겨레 93.6.11, 2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법상 조직폭력배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의 공소시효를 조직 및 가입시점부터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범죄단체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 끝난 시점으로 확대할 방침임(정부·민자당 법사당정협의, 1993.4.21)

: 서울 93.4.22, 3면

○ 형사소송관계법에 관한 입법의견

- 인신보호차원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

행적으로 수많은 구속수사가 강행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구속절차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요구되므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남발되고 있는 구속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법(가칭)」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신중하고 실질적인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영장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판사앞에서 구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박주천 민자당의원).

: 중앙 93.5.8, 5면; 세계 93.5.9, 5면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수사기관의 컴퓨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시 벌금 이하의 형은 기록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형의 실효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하는 등 대폭 단축하며 형실효가 선고되면 전과원적부라 할 수 있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등 전과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임(정부 · 민자당 법사당정협의, 1993.4.21).

: 동아 93.4.22, 30면; 경향 93.4.22, 2면; 서울 93.4.22, 3면; 서울 93.4.30, 22면

Ⅱ. 최신법령 목록

(1993. 4. 16 ~ 1993. 6. 15)

| 공 포 번 호 | 건 명 | 공포년월일 | |
|---------|----------------------------|--|-----------|
| 법 률 | 4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49 등기특별회계법 | 1993.6.11 | |
| | 4550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51 전쟁기념사업회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5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53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 1993.6.11 | |
| | 455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55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56 산림조합법개정법률 | 1993.6.11 | |
| | 4557 축산법개정법률 | 1993.6.11 | |
| | 4558 어항법개정법률 | 1993.6.11 | |
| | 4559 어선법개정법률 | 1993.6.11 | |
| | 456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1993.6.11 | |
| | 4561 중기관리법개정법률 | 1993.6.11 | |
| | 4562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6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64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6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 1993.6.11 | |
| | 4566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 1993.6.11 | |
| | 4567 환경영향평가법 | 1993.6.11 | |
| | 4568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법률 | 1993.6.11 | |
| | 조 약 | 1170 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의연장의정서 | 1993.5.13 |
| | | 1171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대케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 1993.5.24 |
| | | 1172 대한민국과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동기구산하원자 력기구가입에관한교환각서 | 1993.5.24 |
| | | 1173 대한민국과몽골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 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 1993.5.29 |

| 공 포 번 호 | 건 명 | 공포년월일 |
|-----------|---|-----------|
| 1174 |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무역협정 | 1993.6. 3 |
| 1175 |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운송에관한협정 | 1993.6. 3 |
| 1176 |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대터키공화국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 1993.6. 7 |
| 1177 | 선원의건강진단에관한협약 | 1993.6.10 |
| 1178 | 대한민국과러시아연방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 1993.6.14 |
| 대통령령13880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4.20 |
| 13881 | 도서관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4.30 |
| 1388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1993.5.10 |
| 1388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993.5.11 |
| 13884 | 대통령비서실직제중개정령 | 1993.5.15 |
| 13885 |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 1993.5.15 |
| 13886 |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 1993.5.15 |
| 13887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18 |
| 13888 |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 1993.5.20 |
| 13889 |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 1993.5.26 |
| 13890 | 기술사법시행령 | 1993.5.26 |
| 13891 | 해군기지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26 |
| 13892 | 공군기지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26 |
| 13893 |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26 |
| 13894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1993.5.27 |
| 13895 |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27 |
| 13896 |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27 |
| 13897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5.27 |
| 13898 | 광주민중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1993.5.29 |
| 13899 |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1993.6. 8 |
| 13900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13901 | 해운업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13902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13903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공 포 번 호 | 건 명 | 공포년월일 |
|-----------|----------------------------------|-----------|
| 13904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13905 | 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개정령 | 1993.6. 9 |
| 13906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13907 | 공업표준화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13908 | 토지수용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10 |
| 13909 |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 1993.6.16 |
| 총 리 령 418 |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993.5.11 |
| 419 | 기술사법시행규칙 | 1993.5.26 |
| 420 |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26 |
| 421 | 원자력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31 |
| 422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6.15 |
| 외무부령 168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 1993.5.18 |
| 169 |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29 |
| 내무부령 568 |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 7 |
| 재무부령 1920 |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4.29 |
| 1921 |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4.27 |
| 1922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4.27 |
| 1923 |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4.30 |
| 1924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 7 |
| 1925 |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 7 |
| 1926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 7 |
| 1927 | 한국은행고취급규칙중개정령 | 1993.5.18 |
| 1928 | 인삼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14 |
| 1929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 규칙중개정령 | 1993.5.18 |
| 1930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 1993.5.20 |
| 1931 | 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 1993.5.20 |
| 193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27 |
| 1933 |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5.31 |
| 1934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993.6. 3 |
| 1935 | 영사시설사용규칙폐지령 | 1993.6. 5 |
| 1936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 1993.6. 9 |
| 법무부령 369 | 교도관복제규칙중개정령 | 1993.5.27 |

국내입법의견조사 발간목록

| 호 수 | 도 서 명 | 면 수 | 발 행 일 |
|-------|---------------------|------|----------|
| 제 1 호 |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 72면 | 92. 7.29 |
| 제 2 호 |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68면 | 92. 8.31 |
| 제 3 호 | 환경문제 관련 입법의견 | 88면 | 92.10.29 |
| 제 4 호 | 성직자 과세논쟁 | 54면 | 92.11.30 |
| 제 5 호 |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 74면 | 92.12.30 |
| 제 6 호 |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120면 | 93. 3.25 |
| 제 7 호 |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 80면 | 93. 4.30 |
| 제 8 호 |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 130면 | 93. 6.30 |
| 제 9 호 |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 근 간 | |